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과제별 '25년 세부 이행계획

2024. 3.



목차

- I.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
- II.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79
- III.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118
- IV.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16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1-1	마약류 유입 취약 시기 · 지역 타겟형 단속 강화	
	▶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른 타겟형 단속 강화	경찰
	▶ 대마 · 양귀비 특별단속홍보 및 공급사범 중심 단속 강화	해경
	▶ 외국인 마약사범·우범시설 집중 단속 실시 및 국내 마약류 제조사범 집중 단속	대검

<경찰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 범죄 동향 분석을 통해 중점 단속대상 선정, 실효성 있는 타겟형 집중 단속 전개로 마약류 범죄 근절

2. 2025년도 시행계획

-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 단속지역·시기에 맞춰 경찰·검찰·해경·관세청·출입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운영, 가시적 단속활동 전개
 - 단속테마에 맞춰 유흥업소·외국인 밀집시설·공항만 등 실질적 점검
-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클럽 마약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주요 단속테마로 지정,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통해 취약지역 관리
 - ※ 클럽 내부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유통되는 합성마약에 대한 첩보수집, 집중단속 추진
 - △신학기(3~4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기(4~7월) △여름휴가철(6~8월) △연말 유흥객 증가기(10~12월) 등 시기별 중점 단속지역 선정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25년 마약류 범죄 동향 분석을 통해 중점 단속대상·기간 등 재설정

<해양경찰청>

1. 과제 목표

□ 공급사범 중심 단속 → 단속비율* 공급범 60 : 투약범 40

* 단속 비율은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기준 산정

- 과거 단순 투약사범 위주로 단속 → '22년 이후 밀반입 차단·공급사범 등 근원을 차단하는데 집중

※ 해양 마약류 단속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건)	173	412	518	962	1,072	758
인원(명)	164	322	293	294	461	472

2. 과제 내용

- (대마·양귀비 단속) 대마 수확기 및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집중단속 계획에 의거 전국 해경 마약수사관 총동원 특별단속 실시('25. 4월~7월)
- (집중단속)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통해 연중 해양 마약범죄 단속

3. 2025년도 시행계획

- 대마·양귀비 단속과 더불어 밀경 불법성 홍보, 해양 밀반입 및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유통 범죄 등 특별단속 지속 추진(4월~)
 - * 전국 해경 수사관 및 경비함정·파출소 해양 마약범죄 첩보 수집 및 총력 대응 지시
 - * 마약류 종류, 위험성, 처벌법령 홍보물 제작, 단속과 병행 현장 홍보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젊은층 마약사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한 마약류 범죄 근원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소속 기관 간 협의
- (과제 내용) 외국인 밀집지역·마약 우범시설(클럽, 유흥가 등)을 집중 단속하여 마약류 유입을 통제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내 제조사범 단속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주요 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마약 우범시설(클럽, 유흥가 등)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하여 수사·단속에 활용
 - 특히 관세청과 공조하여 마약류 유입 단계에서 원천 통제
-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운용을 확대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합동단속 실시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단속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제조 단서를 철저히 파악, 원료물질 국내 유입 원천 차단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김철회 경감	전화번호	02-3150-1022
	형사과 (해양경찰청)		최형우 경감		032-835-2461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2

1-1-2	수사기관 간 마약류 수사시스템 연계	대검
	▶ 수사기관별 관리 중인 마약범죄 정보의 교환을 통한 수사 효율성 제고	

1. 과제 목표

- 검찰·경찰·해경 등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수사 전개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가능
- (과제 내용) 각 수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인적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 상호 협력체계 강화
 - 경찰, 해경,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사범 수사정보 요청시 신속 공유
 - 마약 범죄전력 정보, 출입국 정보 등 실시간 공유를 통해 수사 효율성 제고

3. 2025년도 시행계획

- 각 기관별 관리중인 마약 범죄정보를 원활히 공유하여 연계된 범죄 및 공범 수사시 활용
 - 각 기관 간 정보 교환 상시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간 신속한 정보 공유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1-3	첨단 수사장비 도입	
	▶ 마약류 탐지·수사장비 도입·보급	경찰
	▶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첨단 증거분석프로그램 등 도입	대검
	▶ CCTV 영상분석장비, 마약류 탐지 장비 도입·보급	해경

<경찰청>

1. 과제 목표

- 지능화되어 가는 마약류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 동향에 따른 첨단 마약류 탐지·수사장비 도입·보급 추진

2. 2025년도 시행계획

- (탐지장비) 수사 현장에서 발견한 마약류 의심 물질의 마약류 검출·판독을 위해 마약류 신속 탐지장비 보급 추진
 - 라만분광기(레이저 투과 방식) 10대, 휴대용 이온스캐너(신체·소지품 잔존 마약류 흔적 탐지) 19대 등(14.6억원)
- (수사장비) 던지기 수법으로 육안 확인이 어려운 공간에 은닉된 마약류를 수색하기 위한 내시경 카메라 보급(0.7억원)
 - 마약사범의 투약 범죄사실을 입증할 중요 증거인 소변의 변질 및 분실 방지를 위해 소변보관 전용 냉장고 보급(0.35억원)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첨단 증거분석 장비 도입을 통한 수사·단속역량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마약수사 세부사업(첨단 증거분석장비 도입 등) 예산 신규 편성(12.01억원)
- 과제 내용
 - ①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마약사범 검거 현장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거 현장에서 증거 채증·분석
 - ② (첨단증거 분석 프로그램) 방대한 증거자료 분석이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 사건 등에 활용
 -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 병원 등의 진료기록부 및 장부,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및 계좌내역 등 분석

3. 2025년도 시행계획

-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25. 6.)
 - 조달청 일반 경쟁입찰공고 게시(2월) →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구매, 일선청 배정(6월)
 - * '25. 6.~12.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사용법 집합교육 실시(6~12월)
-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도입('25. 6.)
 - 조달청 일반 경쟁입찰공고 게시(2월) →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구매, 일선청 배정
 - * '25. 6.~12.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사용법 집합교육 실시(6~12월)

<해양경찰청>

1. 과제 목표

- 첨단 탐지·분석 장비 도입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핵심인 추적 수사 효율성 제고

2. 과제 내용

- 첨단장비 활용, 해양 마약수사 대응력 강화

기 존 (현행)	개 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원본영상 육안으로 분석 ▶ 마약류 탐지장비 25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축약 영상을 필터링 검색하여 신속 추적 ▶ 휴대용 이온스캐너 경찰서 +7대(총32대) 확대 보급

※ 2025년 도입 예산 : 총 6.15억 원

사업명	'25년	주요 지원내용
장비보강	3.15억 원	영상 축약 프로그램 5식*5개 지방청(각 1대)
마약류 탐지장비	3억 원	휴대용 이온스캐너 7개 경찰서(각 1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CCTV분석) 마약류 범죄수사의 핵심인 CCTV 영상분석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수사 신속성 확보(7월)

※ 30분 분량 영상을 53초로 요약, 1주일 분량을 단 7시간 만에 분석

- (탐지장비) 현장에서 신종, 은닉 소량 마약류 신속 탐지를 위해 휴대용 이온스캐너 확대 보급 추진(6월)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김철회 경감	전화번호	02-3150-1022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2
	형사과 (해양경찰청)		김태현 경사		032-835-2361

1-1-4	시료 조작·투약 여부를 신속 판별할 수 있는 감정기법 개발	
	▶ 약물검사 회피 방지를 위한 소변 유효성 확인분석법 개발 및 마약감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대검
	▶ 첨단기술 간이검사 패치 개발	경찰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약물검사 결과의 조작 차단을 위한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고 검사를 의무화하여 결과 신뢰도 향상 및 증명력 강화
- 급증하는 마약류범죄 대응을 위한 ‘마약감정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로 24시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감정역량 확대·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소변 시료 유효성 평가방법 개발’ 예산 신규 편성(0.3억원), △‘약물검사 온라인 자동화시스템 도입’ 예산 신규 편성(5.38억원)
- (과제 내용) 화학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제고하고, 감정 과정별 검증체계 고도화
 - ① 소변 시료의 조작을 통한 약물검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분석법 개발
 - ② 약물검사의 온라인 자동화시스템 구축
 - ③ 개발된 확인 분석법 및 자동화시스템을 국제공인시험법으로 추가·확대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약물검사 대상 시료인 소변의 정상/비정상 여부 판별을 위한 「소변 시료 유효성 평가 방법」 개발 (‘25. 12.)

- 크레아티닌 농도(합량 기준) 측정을 통해 비정상 소변 여부 판별
 - * 마약감정의 회피 수단으로 물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 소변 중 크레아티닌의 양(정상범위: 20~300mg/dL)이 감소하게 되고, 크레아티닌 농도가 20mg/dL 미만시 비정상 상태로 판별
 - cf) 크레아티닌: 근육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는 물질
- 대상성분에 대한 분석조건 설정(4월) → 분석법 유효화(6월) → 실제 감정시료 분석(10월) → 실무적용(12월)

- 약물검사를 자동화하여 감정의 신속성·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물검사 온라인 자동화시스템」 도입 (25. 12.)
 - 약물검사 자동화 전처리기를 확보한 후 마약류 감정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동함으로써 약물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검사의 신뢰성 향상
 - 장비구매 조달계약 요청·입찰(5월) → 성능평가 진행, 제안서 평가(8월)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9월) → 장비 입고(11월) → 장비 규격 확인·검수(12월)

<경찰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 확인할 수 있는 간이검사 패치 개발

2.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이크로니들 패치 피부 부착을 통한 간질액 기반 검사를 통해 마약류 14종 투약 여부 확인 가능한 패치 개발 추진
 - * 1분 가량의 짧은 부착시간으로 10분 이내에 마약류 투약 여부 검출 가능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26년까지 개발 완료 후 현장 보급 추진

담당부서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대검찰청)	담당자	김진영 보건연구원	전화번호	02-3480-2152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김철회 경감		02-3150-1022

1-1-5	마약류보상금 확대	대검
	▶마약류보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및 보상금 상한액 상향	

1. 과제 목표

- 마약류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을 상향하여 마약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상금 지급절차를 정비하여 신속·공정한 지급 실시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령)
- (과제 내용) ▲마약류범죄의 발각 전후를 불문하고 마약류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마약류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기 위한 법무부령 개정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 (‘25. 12.)
 - 도주한 마약류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수사 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중요 수사단서를 신고한 사람 등 마약류범죄 신고·고발·검거자에 대한 폭넓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 해당 법령 소관부처(식약처)와 협의 중

현 행	수 정 안
제7장 보칙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54조(보상금)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위 범죄를 범한 사람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 제14조 개정 (‘25. 2.)
 - 마약류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보다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 ▲지급신청시 송부자료 확대 ▲중복 지급 제한규정 신설 ▲지급신청서 서식 개선 등

-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 6. 10. 개정, '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삭제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4. 12. 31. ~ '25. 2. 10.

현 행	수 정 안																																																				
<p>제5조(신청절차)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p> <p>1. ~ 3. (생 략)</p> <p>제1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건기준가액</th> <th colspan="2">보상금 상한액</th> </tr> <tr> <th>공무원</th> <th>민간인</th> </tr> </thead> <tbody> <tr> <td>10억원 이상</td> <td>1천만원</td> <td>5천만원</td> </tr> <tr> <td>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td> <td>700만원</td> <td>3천만원</td> </tr> <tr> <td>1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 <td>500만원</td> <td>2천만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300만원</td> <td>1천500만원</td> </tr> <tr> <td>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td> <td>200만원</td> <td>1천만원</td> </tr> <tr> <td>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td> <td>1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td> <td>70만원</td> <td>500만원</td> </tr> <tr> <td>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d> <td>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td> <td>3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공무원	민간인	10억원 이상	1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3천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0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만원	1천500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만원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100만원	<p>제5조(신청절차) ② (좌동)</p> <p>1. ~ 3. (생 략)</p> <p>4. 추징금 집행예정 대상자카드 등 추징(예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제14조(지급기준) ① (좌동)</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건기준가액</th> <th>보상금 상한액</th> </tr> </thead> <tbody> <tr> <td>10억원 이상</td> <td>3억원</td> </tr> <tr> <td>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td> <td>2억원</td> </tr> <tr> <td>1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 <td>1억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5천만원</td> </tr> <tr> <td>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td> <td>3천만원</td> </tr> <tr> <td>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td> <td>1천만원</td> </tr> <tr> <td>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td> <td>500만원</td> </tr> <tr> <td>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d> <td>300만원</td> </tr> <tr> <td>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삭 제></p> <p>⑥ 지급 대상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p>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공무원	민간인																																																			
10억원 이상	1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3천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0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만원	1천500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만원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100만원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신 설>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1-6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대검
	▶내부자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	

1. 과제 목표

- 마약류 범죄조직 내부자의 제보·신고를 활성화하여 직접증거 확보 및 수사 효율성 제고

2. 과제 내용

-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마약류범죄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자 형벌감면 도입(‘24. 1.)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25. 12.)
 - 마약류범죄 또는 그에 관한 범죄수익은닉범죄자가 자수 또는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한 제보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특례규정’ 신설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수사협조 유인제도 계속 추진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3
------	---------------	-----	---------	------	--------------

1-1-7	온라인 마약유통 관련 수사 전담팀 보강 및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계 구축	
	▶전담수사팀 개편, 해외 기업 협력체계 강화	경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개편, 유통범죄 수사 강화	대검

<경찰청>

1. 과제 목표

-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마약류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기존 수사팀 개편 및 단속범위 확대,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강화

2. 2025년도 시행계획

- (수사팀 개편)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 텔레그램 등 판매채널과 가상자산 흐름 추적·분석 등 단속범위 확대
 - 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TF팀 운영, 가상자산 흐름 분석 등 협업 체제 구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체제 논의 추진
- (협력체계 강화) 해외 IT 기업과 외국 국가기관 경유 없이 자료 확보체계 구축, 한국 경찰청-텔레그램 간 공식 협력 추진 中
 - * 구글, 애플, 메타, 트위터, 틱톡 및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범죄의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수사팀 강화 및 확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4개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에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 중이나, 대응 강화를 위해 수사팀 확대 필요
- (과제 내용) 주요 거점지역 검찰청 중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수원·대구지검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수사팀' 편성(기존 인력 재배치)

3. 2025년도 시행계획

- 수원·대구지검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25. 6.)

*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서 마약 수사전담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수사팀 개편에 따른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단속 강화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김철회 경감	전화번호	02-3150-1022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3

1-1-8	잠입수사(위장·신분 비공개) 도입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	경찰
	▶마약류 범죄조직에 대한 적극적 위장 수사행위 허용	대검

<경찰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범죄 사전차단,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 추진

2. 2025년도 시행계획

- (외부 자문단 운영) '24년 위장수사 관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건 발의, 활용도 높은 제도 마련을 위해 외부 자문단 출범('24. 11. 5.)

< 위장수사 관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제안자	제안일	공통 내용	차이점
한지아의원	'24. 8. 16.	▶ 신분 비공개 - 수사부서장 승인 - 반기별 국회 보고	- 신분 비공개 수사 종료시 즉시 보고 - 수사기관의 마약류 판매 광고 허용
백혜련의원	'24. 9. 6.	▶ 신분 위장 - 법원 허가	-
박준태의원	'24. 10. 7.	- 기간 3월(최대 1년)	- 수사기관의 마약류 판매 광고 허용

- 경찰청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법률·범죄수사학·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위장수사 제도 마련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국회 발의된 개정안 심사 시 수사현장 의견 반영 추진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범죄의 전문화·조직화로 인해 수사에 한계가 있어, 신분을 위장하여 증거수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사기법 도입하여 활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범죄 수사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위장수사에 필요한 계약·거래 등 행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청소년성보호법」(21. 3. 개정) 및 「성폭력처벌법」(24. 12. 개정) 일부 성범죄에 신분 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 (과제 내용) 마약 범죄조직은 조직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이를 담보로 적극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위장수사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행하도록 규정 신설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5. 연중)
 - 마약류범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직원은 증거 수집·범인 체포 등을 위해 부득이한 때 신분 위장 문서 등 작성·행사, 위장신분 이용 계약·거래, 마약류 소지·판매·광고 등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행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김철회 경감	전화번호	02-3150-1022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2

1-1-9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범위 확대	대검
	▶다크웹, 텔레그램 등 정보 수집에 특화된 프로그램 도입	

1. 과제 목표

- 마약류 정보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다크웹,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확대하여 범죄 수집역량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마약수사 세부사업(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예산 신설(2.64억원)
- (과제 내용) 다크웹·텔레그램 등의 정보 수집에 특화된 프로그램(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하여 다크웹 1만여개, 텔레그램 3천여개 채널을 확인 후 탐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25. 6.)
 - 조달청 일반 경쟁입찰공고 게시(2월) →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프로그램 도입, 일선청 배정(6월)

* '25. 6.~12.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프로그램 사용법 집합 교육 실시

-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활용도 개선('25. 12.)
 - 솔루션으로 확인된 다크웹·텔레그램 채널을 시스템에 등록 후 활용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1-10	온라인 불법거래 신속 차단을 위한 서면심사 도입	방통위
	▶마약류 정보를 방심위 서면심사 대상에 추가, 심의속도 제고	

1. 과제 목표

- 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마약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온라인 불법 마약 거래·광고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목적), 제3조(위원회의 설치)
- (과제 내용) 방심위 서면심의 대상을 기존 디지털성범죄물에서 마약류 정보까지 확대하여 마약 거래·광고 등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서면심의 도입을 위한 「방통위법」 개정 추진('25.12월)
 - 제22조제4항의 서면(전자포함)심의 대상에 마약류 정보 추가

<방통위법>

제22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박상현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1567
------	-------------------------	-----	---------	------	--------------

1-1-11	시정조치 미이행 시 서비스 제공자 제재	방통위
	▶방심위 시정요구 및 방통위 시정명령 미이행시 제재	

1. 과제 목표

-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온라인 상 불법마약 거래·광고 등의 유통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확산을 방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3조(벌칙)
- (과제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약정보에 대한 방심위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및 방통위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 등 제재

3. 2025년도 시행계획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약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방심위 시정요구 미이행 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른 고발조치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박상현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1567
-------------	-------------------------	------------	---------	-------------	--------------

1-1-12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 감시 기술 도입	대검
	▶ 「다중영상 기반 마약사범 추적 및 검거를 위한 AI 기술 개발」 과제 2차년도 수행	

1. 과제 목표

- 마약류사범 추적·검거에 다수 활용되는 다중영상(CCTV)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CCTV 분석을 위한 AI 기술 개발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3. 12. 과기정통부, R&D 기술 개발 과제 최종 반영, '24. 4. 과제 수행 기관 선정 및 과제 수행 착수
- (과제 내용) 3개년 개발계획 중 2차년도 개발과제 수행

3. 2025년도 시행계획

- 2차년도('25년) 과제 수행 ('25. 12.)

- 마약류 사범 공범 식별 및 시공간 확장 최적화 추적기술 반영
- 전신 몽타주 기반 사람 속성 식별모델 개발
- 이동수단 변경에 강인한 자동 추적기술 반영
- 통제배달 휴대용 영상감시 시스템 실증테스트
- 마약 던지기 및 전달 행동 탐지 AI 모델 고도화
- 개인 이동수단 탑승·하차 행위 인식기술 고도화

* 대검, 위 과제 수행기관 관리·감독(AI 기술 개발 방향 지속적 검토, 피드백 전달 등)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2차년도 과제결과 분석을 토대로 3차년도('26년) 과제 계속 수행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1-13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 개발·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 지원으로 수사역량 강화	경찰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 수사 활성화	대검

<경찰청>

1. 과제 목표

-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분석 지원

2. 2025년도 시행계획

- (추적 프로그램 도입) 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맞춰 '21년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시범운영
 - '16년부터 사이버수사팀이 활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정보 등 추적 가능한 프로그램(Chanalysis 社)을 마약수사 분야에도 도입
 - * '21년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예산 9.35억원 편성
- (전문가 분석 지원) 가상자산 전문 업체의 기술 지원을 통해 △ 암호화된 거래내역 분석 △가상자산 흐름 도식화 등 활용
 - 현장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에 가상자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더하여 마약류 범죄에 활용되는 가상자산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
 - * '25년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지원 신규예산 9.5억원 편성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가상자산으로 마약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믹싱 등 익명화 기술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수반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하여 수사·단속 역량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마약수사 세부사업(가상화폐 추적 전문 인력 양성 등) 예산 증액[(‘24년) 4.4억원→(‘25년) 13.5억원]
- (과제 내용) '24년 가상자산 추적 기술 보유업체와 수사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이용시간 단위)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높아 이용시간을 늘리고, 가상자산 추적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성 확보

3. 2025년도 시행계획

- 가상자산 추적 수사 지원 서비스 지원('25. 연중)
 - 일선 청에 가상자산 추적 수사지원 서비스 지원
-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25. 12.)
 - 전문교육 대상 마약수사관 선발(상반기) → 전문교육 실시(하반기)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김철회 경감	전화번호	02-3150-1022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2

1-1-14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대검
	▶마약거래에 이용된 예금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1. 과제 목표

- 다크웹·SNS 등 온라인 비대면 마약류 거래에 필수도구인 계좌를 즉시 정지하여 범행 중단 및 추가 범행 방지 등 실효적 대처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대검-전국은행연합회간 MOU, 각 개별은행간 협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제도화
- (과제 내용)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즉시 출금 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을 위한 수단을 무력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25. 연중)
 -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여 지급정지 요청시 금융회사가 계좌의 출금을 정지
 - 명의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마약류범죄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지급정지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지급정지 종료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관련 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3
------	---------------	-----	---------	------	--------------

1-1-15	인공지능(AI) 활용 밀반입 고위험 여행객 판별	관세
	▶인공지능 기반 고위험 여행객 선별 비중 확대	

1. 과제 목표

- 우범여행자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저위험 대상은 신속 통관하고, 고위험 대상에 대해 집중 검사로 인력 부담 해소와 적발률 향상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과제 내용) 우범여행자와 수화물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선별 모델 활용* 확대로 실시간 선별 및 고위험 대상 검사 강화

* ('21)일반수입 → ('22)우범화물 → ('23) 우범 여행자 → ('24) 개인수입 → ('25) 국제우편

3. 2025년도 시행계획

- 각 공항세관 마약 우범여행자 선별 현황 파악 (2월)
- 세관별 여행자 검사 인력 고려 AI 선별 비중 확대 (6월)
 - 마약류 밀반입 패턴이 대규모 공항에서 소규모 공항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세관별 현장 검사 인력을 고려한 고위험 마약류 선별 확대
- 국제우편물에 대한 AI 기반 우범물품 선별모델 개발 (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외부 기관(검경 등) 마약류 적발 정보를 확보하여 AI 학습 활용

담당부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담당자	신승철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3225
------	---------------------	-----	---------	------	--------------

1-1-16	외국 선박 임검권 강화	해경
	▶해양 마약류 임검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 제2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M-NIC) 개최 및 동남아 주요 우범국 법 집행기관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2. 과제 내용

- UN 해양법 협약상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체포·수사를 목적으로 연안국의 형사 관할권은 행사 불가하지만
 - 마약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마약 생산국과의 업무협약·조약·제도화 등 협력을 구체화하여 해양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협력 기반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M-NIC 정례화) 해양 마약류 범죄 글로벌 협력을 강화를 위해 '24년에 이어 제2차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컨퍼런스(M-NIC)」 개최(7월)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컨퍼런스(M-NIC)	
▶ (개최시기·장소)	'25. 7월 중순경, 3박4일, 인천 송도
▶ (의 제)	진화하는 해양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 (참 석)	아세안, 아태지역 13개국, 인터폴 등 국제기구, 국내기관 등 100여명

- 주요 마약생산국 등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공조 강화
 - 캄보디아(경찰청), 필리핀(마약청) 의향서 체결 및 태국(경찰청), 싱가포르(마약청) 핫라인 개설 등 협력체계 구축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M-NIC 참석기관 확대 등 세계유일 해양 마약류 범죄 국제회의로 발전

담당부서	형사과 (해양경찰청)	담당자	김희진 경위	전화번호	032-835-2561
------	----------------	-----	--------	------	--------------

1-1-17	우범 선박· 화물 주기적 정밀검사	관세
	▶ 고위험 국가(항만) 경유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주기적 검사	

1. 과제 목표

- 우범국가를 경유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주기적 검사 실시로 대량 밀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해상 마약밀수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과제 내용) 마약 생산·소비국을 경유하는 선박 및 화물 검사

3. 2025년도 시행계획

- 입항 선박 대상 위험도에 따른 선별 후 검사 실시 (매월)
 - 주요 마약 생산·소비국가(항만)를 경유하는 선박의 이동 경로와 마약밀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우범선박 선별 및 승선검사 실시
 - 부산세관 도입(1대, '24.11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 시범운용 (11월)
- 우범화물·컨테이너 선별 및 검사 실시 (매월)
 - 마약 우범국발 컨테이너 내·외부 마약 은닉 가능 공간*에 대해 장비검사(차량형검색기, 컨테이너검색기 등) 및 개장검사 실시
 - * 냉동 컨테이너 외부에 부착된 냉각유닛 내부 공간, 팔레트 등 운반용기 빈 공간 등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의 시범운용 결과와 각 항만별 특성, 수중 시야(탁도), 기상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세관 확대 도입 검토

담당부서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담당자	이광식 사무관	전화번호	042-484-1147
------	------------------	-----	---------	------	--------------

1-1-18	수중드론 활용한 선저 검사 실시	해경
	▶ 수중드론 활용하여 우범선박에 대한 불시·선저 검사	

1. 과제 목표

- 우범 선박 수중드론활용 선저검사 '24년 13회 → '25년 20회
- * 장비대수·도입 시기 및 주요 무역항 우범선박 스케줄 등 감안하여 '25년 달성 목표 설정

2. 과제 내용

- 첨단장비 활용, 해양 마약수사 대응력 강화

기 존 (현행)	➔	개 선 (안)
▶ 인력으로 선저검색 실시		▶ 수중드론으로 선저검색하여 신속성 및 안전확보

* '25년 도입 예산 : 1억원(5대 도입)

3. 2025년도 시행계획

- (선외수색) 마약류 은닉 의심선박을 수중에서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수중 드론을 조기 도입 감시망 강화(7월~)

* '24년 선저검색 13회 실시 → '25년 주요 무역항 불시 선저검사 추진(관세청 협조)
 ※ '23년 통계청 기준 남미출항 선박 : 총 2,471척

- (협조) 선박회사와 협조하여 마약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협력

* 해운협회, 선박대리점 자체 선박검사(씨체스트, 스러스트, 타기트링크 등) 및 신고협력

담당부서	형사과 (해양경찰청)	담당자	최형우 경감	전화번호	032-835-2461
------	----------------	-----	--------	------	--------------

1-1-19	우범 수화물 긴급개장검사 실시	관세
	▶ 국내 마약류 불법유통 수사 정보와 연계한 긴급개장검사 실시로 밀반입 차단	

1. 과제 목표

-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로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및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과제 내용) 국내 수사기관(검·경·해경·국정원 등)과 마약류 밀반입 정·첩보 공유로 우범화물(여행자·우편·특송·일반화물 등) 긴급개장검사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내 수사기관의 마약류 밀반입 정보 입수 및 확장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검사 강화 (수시)
- 우범화물 검사 시 과학검사장비 활용 및 적극적 파괴검사 실시 (수시)
 - 이온스캐너, 간이시약, 라만 분광기 등 장비 사용법 주기적 교육
- 관리대상화물 마약류 적발 코드 신설* 및 관리 강화 (12월)
 - *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검사결과 마약류 적발 코드(K) 신설
- 항공 특송화물 선별시스템(24.2월 구축)을 해상 특송화물까지 확대 (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우범 환적화물 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담당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담당자	강승현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7904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청)		민경욱사무관		042-481-7832
			홍인영사무관		042-481-7835

	여행객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확대 및 법무부 입국심사 전 여행자 일제검사 시행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통관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수입 시도의 효과적 차단 추진 ▶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 시행으로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밀반입 시도 원천 차단 	관세

1. 과제 목표

-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응하고자 첨단 통관감시장비의 활용을 확대하여 한정된 인력에 따른 적발능력 한계 극복
- 우범노선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 대한 일제검사 효율성을 제고하여 마약류 밀수 시도자의 세관 감시망 회피 행위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2025년 관세청 통관감시장비 효율화 계획
- 과제 내용
 - ①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첨단 통관감시장비 도입 확대
 - ② 여행자 마약 밀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우범국발 여행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핸드캐리 수하물 및 신변 전수검사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 일제검사 시행 (1월~)
 - 인천공항(T1)에서 우범노선 탑승객 대상 시범운영(주 1~2회)

- 핸드캐리 수하물 X-Ray 전수검색 및 신변검사 실시
- 마약·총기류 적발 위주 운영(과세물품은 기존 입국장 검사대에서 통관)
- 마약 우범자 등은 기탁수하물 포함 정밀검사 실시(입국장 검사대)

□ 여행자 신변검색기 도입·배치 (12월)

-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2대(7.92억 원), 열화상카메라 15대(3.3억 원)

□ 마약탐지장비 도입·배치 (12월)

- 이온스캐너 8대(4억 원), 라만분광기 4대(4억 원)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검사 결과 및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여부 검토

* 횟수(주 1회 → 일 1회), 장소(인천공항T1 → T2) 등

담당부서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	이영주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7831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청)		김 용 사무관		042-481-7751

1-1-21	대형화물 검사용 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관세
	▶ 마약류 적발에 용이한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1. 과제 목표

- 컨테이너검색기의 적기 교체·도입을 통한 장비 성능 최적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025년 관세청 통관감시장비 효율화 계획
- (과제 내용) 대형화물 은닉 마약류 적발에 용이한 신기술 적용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3. 2025년도 시행계획

-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장비 노후화* (17년 3개월 운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 및 건축방식을 적용한 컨테이너 검사센터 구축** (12월)
 - 국내최초 혼합방식[고정형 양방향(투과) + 후방산란(2면이상)]기술도입으로 마약적발 성능을 제고하고, 리모델링 방식의 재구축을 통한 예산절감

* 내용연수 : (고정식) 13년, 평균 교체주기 : 16~17년

** 총 사업비 : 75억 (감리비 0.5억원, 검사·검수용역비 0.8억원 별도)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향후 장비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 컨테이너검색기 노후화 교체*는 통합검사센터 구축에 포함하여 재구축 추진

* 교체시기 도래 예정 : 평택 PNCT부두(15년간 운용), 부산신항 남측(14년간 운용)

담당부서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청)	담당자	김용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7751
------	------------------	-----	--------	------	--------------

	국제우편물 단계별 검사체계 구축	
1-1-22	▶ 세관 통과 후, 배송 전 우편집중국에 마약류 검색시스템 마련	대검
	▶ 우정사업본부 X-ray 판독역량 강화 교육 지원	관세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국내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공항·만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에 은닉되어 확산되므로 세관 통과 후 전국으로 배송되기 전 마약류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확산방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우편법」 제17, 2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법규 위반 혐의 우편물을 개봉하고, 마약류가 은닉된 우편물의 배송을 거부하거나 제한 가능
- (과제 내용) 국제우편물에 대한 단계별 검사체계를 구축, 세관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하여 해외 마약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

3. 2025년도 시행계획

- 세관 검색에 이은 '2차 저지선' 확보하여 마약류 확산 최소화('25. 12.)
 - 전국 배송 전 거치는 우편집중국(서울, 수도권 허브 7곳 등)에 마약류 검색시스템을 구축, 마약류 등 '우편금지물품'을 개봉하고, 적발된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통제배달' 등 수사 진행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1. 과제 목표

-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우정사업본부 인력의 X-ray 마약류 판독(2차 검색) 역량 향상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대검찰청의 「통관 이후 국제우편 검사강화 방안」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우리청에 교육 등 지원 요청
- (과제 내용) 우정사업본부의 X-ray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2025년도 시행계획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협의에 따라 세부 지원방안·일정 확정 및 추진
 - (현장 실무 교육 : 소수인원) 우정본의 인력을 인천공항 국제우편통관센터에 초청, 마약류 X-ray 판독 교육*(On the Job Training) 실시
 - * 세관 X-ray 전문 판독요원과 실제 판독업무 수행, 1:1 마약류 판독 역량 개발 및 노하우 전수
 - (관세인재개발원 교육 : 다수인원) 우정본 인력 대상 'X-ray 판독역량 개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
 - * 세관 X-ray 전문가 판독기법 교육, X-ray 검색현장 견학, 인재원 판독실습 프로그램 등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3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청)		민경욱 사무관		041-481-7832

1-1-23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설	관세
	▶ 마약류 밀반입 검사강화를 위한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설	

1. 과제 목표

-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등 국민 안전 위협 물품의 효과적인 반입 차단과 세관검사 실효성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국제우편물류센터(IPO: International Post Office, 우정사업본부) 증축에 따라 세관검사를 위한 독립 공간(4,500㎡) 확보

< 국제우편물류센터 증축사업 개요 >

- (내용) 국제우편물류센터 옆 공터에 기존 시설 수평 증축 진행 사업
- (규모 / 일정) 6,500㎡ / 설계: '24년.下~'25년, 공사: '25년.下~'26년

-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구축 위한 관세청-우정사업본부 MOU체결('23.5월)
- (과제 내용) 마약류 밀반입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 내에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설

3. 2025년도 시행계획

- 화물 자동분류기, X-ray 검색기, 판독실 등 구축 예산 소요 제기 및 확보 (12월)
- 예산확보 후 계약 등 사업추진 전담팀 구성 및 활동 (12월)
 -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 발주 준비, 협상 계약체결 준비 등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조달계약('26년 상반기) → 착공 및 임시검사장 운영('26년 하반기~)
- 완공 및 운영('27년 하반기)

담당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청)	담당자	민경욱 사무관	전화번호	041-481-7832
------	-------------------	-----	---------	------	--------------

1-1-24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체계 구축	관세
	▶ 전자상거래 급증 대비, 통관 인프라 개편 추진	

1. 과제 목표

- 개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사업 추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과제 내용)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체계 구축
 - 사이버몰 운영업체가 보유한 거래정보 사전 입수 확대
 -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신고서 신설
 -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 국민편의를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

3. 2025년도 시행계획

- ①시스템 업무 분석·설계, ②장비입주·설치(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예산) '25년 예산액 72억 원 (총 사업비 : 232억 원, ~'26.하)
 - (법령)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시스템 개발 완료 및 통합테스트 후 개통(~'26.하)

담당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청)	담당자	류승하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7852
------	-------------------	-----	---------	------	--------------

1-1-25	마약류 사범 정보로 밀수 가능성 높은 우범자 선별	
	▶ 관계기관 보유 마약사범 정보 입수·분석 및 선별 활용으로 마약밀수 고위험자 검사 강화	관세
	▶ 검찰-세관 정보교환을 통해 마약밀반입 우범자 선별로 세관단계 밀수입 단속망 강화	대검

<관세청>

1. 과제 목표

- 관계기관 보유 마약사범 정보 활용으로 마약밀수 단속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관세법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 (과제 내용) 마약단속 관계기관 보유 마약밀수 고위험자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시를 통해 마약밀수 차단

3. 2025년도 시행계획

- 관계기관 보유 마약류 관련 정보* 입수 방법 협의 및 요청 (6월)
 - * (대검) 마약류 밀수·유통범죄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내·외국인, (외교부) 마약류 밀수·유통범죄로 영사조력 받은 재외국민, (법무부) 마약류 밀수·유통범죄로 강제퇴거된 외국인
- 입수된 마약류 관련 정보 분석 및 마약우범자 등록 (7월)
- 마약우범자 활용 마약밀수 고위험자 선별·검사 강화 (8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 우범자 정보 입수 가능 범위 확대*(~'26.2월)
 - * 관세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생년월일만 입수 가능 → (개정) 주민등록번호 등 입수 가능
- 관계기관 보유 마약류 관련 정보의 주기적 입수 및 활용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사범 특성을 반영, 세관에서 마약 범죄전력 정보를 활용하여 집중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단속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관세법」 제264조의11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해 관세청에서 검찰에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요구 가능
- (과제 내용) 공항분실에 설치한 검찰과 세관의 합동분석팀(PRO-APIS)을 강화,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의심자의 수하물 등을 우선·집중 검사

* 마약 범죄전력 정보, 전력자 및 동반자 등

3. 2025년도 시행계획

- 검찰-세관 합동분석팀 활동 강화('25. 연중)
 - '24. 12. 인천·김해공항분실과 세관을 연계하여 합동분석팀 설치, 운용을 확대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

담당부서	국제조사과 (관세청)	담당자	우제국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7702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2

1-1-26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대검
	▶ 주요 마약류 유입국 대상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1. 과제 목표

-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발송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하는 공조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태국과 마약수사관을 상호파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주요 마약류 유입국으로 시스템 확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마약수사 세부사업(마약수사관 국외 상호파견) 예산 증액 [(‘24년) 0.8억원→(‘25년) 3.14억원]
- (과제 내용) 주요 마약류 유입국(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의 마약청 등 관계기관에 검찰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마약조직을 검거함으로써 범죄의 근본적 원인 제거

3. 2025년도 시행계획

- 주요 마약류 유입국 3개국에 검찰 마약수사관 파견(‘25. 연중)
 - 태국 마약청, 베트남 공안부 마약통제국,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 수사국에 검찰 마약수사관을 1명씩 파견하여 공조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업무 수행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1-27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위상 강화	대검
	▶ 회의 참석 규모 확대 및 회의 질적 향상	

1. 과제 목표

- 국제화된 마약류 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규모로 격상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주도로 1989년부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 30년 동안 매년 아시아 최대 국제 마약류 회의로 운용중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마약수사 세부사업(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예산 편성 [(‘25년) 1.38억원]
- (과제 내용) ▲ 국제회의 참석국, 규모 확대, ▲ 국제회의 전문용역 업체(PCO)를 통해 회의 전문성·완성도 등 질적 향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25. 9.)
 - 참석국의 마약류 현황 파악 및 정보교류, 협력방안 등 논의
 - * 제32차 회의에서는 약 30개국 등 마약관계관 약 250명 이상 초청 예정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1-28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역할 강화	대검
	▶ 마약수사 공조를 위한 지원 대상국 확대	

1. 과제 목표

- 주요 마약류 유입국이 다수 위치한 아세안 지역에서의 국제공조 확대
 - '12년 설립된 APICC(회원국 10개국)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여 실시간 공조수사가 가능한 환경조성 필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마약수사 세부사업(APICC 사업) 예산 편성[('24년) 1.64억원→('25년) 2.69억원]
- (과제 내용) ▲ APICC 회원국 대상 수사장비 지원, ▲ 수사기법 교육을 통한 마약류 수사역량 강화, ▲ APICC 지원국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실시간 공조수사 기반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베트남, 캄보디아 대상 마약퇴치지원사업 실시('25. 5. 및 11.)
 - 마약수사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국의 마약수사역량 강화
 - 실시간 범죄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 진행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1-29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운영	경찰
	▶ 아태지역 마약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 활용, 수사 공조 효율성 증대	

1. 과제 목표

-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및 수사 공조 확대
* Asian Narcotics Crime Response Alliance(ANCRA)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4. 9월 한국 경찰 주도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아세아나폴 및 15개국 마약수사기관의 참여 확보
* (동남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동·중앙·남아시아) 한국, 일본, 몽골, 네팔, 인도, 스리랑카 (태평양) 몰디브
- (운영 방식) 참여기관별 컨택포인트 지정,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정례회의를 통해 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 (과제 내용) 다국적 마약밀수조직 정보 공유, 합동 마약단속 등 협의체를 활용한 수사 공조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전체 참여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 및 아태지역 단속작전 구체화(11월)
 - 국가별 공조 요청 사건 수사경과 공유 및 합동 단속 대상 사건 선정
 -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송환 및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합동 마약 단속 제안 및 구체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아태지역 합동 마약 단속 실시 및 성과 검토
- 협의체 운영규칙을 체계화하고, 성과 홍보를 통해 참여국 확대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경감 박다운	전화번호	02-3150-2038
------	--------------------	-----	--------	------	--------------

1-1-30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체 참석 확대	
	▶ 국제회의 참석 확대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대검
	▶ 마약류 국제회의에서 논의 주도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경찰
	▶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 강화	식약
	▶ 국제기구 회의참석	해경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퇴치 국제회의 등 참석을 통해 마약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화된 마약류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마약수사 세부사업(국제회의) 예산 편성('25년) 0.26억원
- (과제 내용) 주요 마약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체제 구축 및 강화
 - * ▲ 유엔마약위원회(UNCND) ▲ 아-태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 ▲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 아세안 마약고위관계관 회의(ASOD) ▲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ADEC) 등

3. 2025년도 시행계획

- 아태지역약물대책회의(ADEC) 참석('25. 1.)
 - 마약류범죄 동향 등 정보교환, 참가국들과의 공조 강화
 - * 일본 경찰청(NPA) 주관하는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회의체로서 1995년부터 매년 개최, UN 및 인터폴 등 국제기구, ASEAN, 미국 및 중국 등 20개국 이상 참가하는 회의체
-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참석('25. 3.)
 - '국제마약통제협약' 및 '2019년 장관급 선언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논의
 -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본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 국제마약 관련 UN 최고회의체

국제마약단속회의(IDECC) 총회 참석('25. 9.)

○ 마약류범죄 동향 및 주요 국제공조사례 공유, 공조방안 등 논의

* 美 마약청(DEA)이 매년 주관, 120여개국 4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단일국가 주최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수사기관 회의체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참석('25. 10.)

○ 아·태지역 내 마약범죄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방안 논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주관 연례 개최 회의체

<경찰청>

1. 과제 목표

마약범죄 분야 대표적인 국제회의에 참석, 최신 마약범죄 동향 파악 및 한국 경찰의 마약범죄 척결 노력 홍보

2. 2025년도 시행계획

마약범죄 분야 국제회의체 참석 확대 및 논의 주도

* ▲유엔마약위원회(UNCND) ▲아-태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국제마약단속회의(IDECC) ▲아세안 마약고위관계관 회의(ASOD)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ADEC) 등

경찰청 주관 제13차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개최(11월)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rcotics ('10~)

<식약처>

1. 과제 목표

마약류 국제협약 준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협력 추진

2. 과제 내용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과제 내용)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체 참석 및 협력체계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UN 마약위원회 회의 참석(3월)
-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DAP) 회의 참석(8월)
- 아-태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국제 마약 수사 컨퍼런스·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참석(10월)

* (예산)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사업(국제개발협력(ODA)) : 0.11억원('25)

<해경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 회의 참여로 국제공조 강화

2. 과제 내용

- 마약류 생산·유통 국가 및 국제 법 집행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 2025년 국제회의 참석 예산 : 0.11억원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제회의) 해양 마약수사 전문기관으로 국제 법집행 기관간 국제 공조 및 첩보협력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해 UN마약위원회 참여(3월)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경감 박다운		02-3150-2038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숙 사무관		043-719-2804
	형사과 (해양경찰청)		경위 김희진		032-835-2561

1-1-31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	
	▶ 인터폴 마약범죄 공조작전 등 다자간 공조작전 참여 확대	경찰
	▶ 동남아·중남미 국제협력 채널 확장	해경

<경찰청>

1. 과제 목표

-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출발지를 겨냥한 인터폴 공조작전 실시, 마약 공급책·도피사범 검거 및 마약류 공급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인터폴은 경찰청 편당 사업인 MAYA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중 글로벌·권역별 마약범죄 국제공조 작전 추진 중
 - * '24년도 6개국 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작전 실시, 29명 검거·1조 4천억원 상당 마약 압수
- (과제 내용) 편당 기여국으로서 인터폴과 작전 공동 기획 및 참여

3. 2025년도 시행계획

- '25년도 합동작전 계획 단계별 진행 주도 및 체계적 추진(연중)
 - * 연간 계획수립 → 사전회의 → 작전 실행 → 결과 분석·홍보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주도하며, 국내수사와 연계하여 가시적 성과달성 경주
 - 중국 등 주 유통 경로 신규 참여 및 공급지 중심의 작전 전개
 - 인터폴 마약팀·현지 경찰기관과 조율하여 현장 위주의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공동조사팀(OST) 파견 적극 추진

<해경청>

1. 과제 목표

- 마약류 생산·유통 국가 및 국제 법 집행기관간 마약범죄 최신 동향 정보 확보 및 공조수사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2. 2025년도 시행계획

- 콜롬비아 해군 '오리온 캠페인' 현지 참여 등(2회 이상↑, 참여인원 3 → 5명 확대)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경감 박다온	전화번호	02-3150-2038
	형사과 (해양경찰청)		경위 김희진		032-835-2561

1-2-1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식약
	▶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별 예측량 산정 등 수요 예측 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 제조·수입·유통 공급관리에 필요한 시장분석 등을 통한 치료에 필수적인 수요량 예측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 수요 예측 체계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 수요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 시장규모, 환자추이, 처방량,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효능군 예상 수요 예측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3월~)
 - *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별 수요 예측 (Tool) 마련 연구용역 추진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의료용 마약류 수요 예측 모델 마련 및 효능군별 수요 예측 지속 추진
 - * ('26~'28) 매년 의료용 마약류 수요 예측 모델 정립, 3개 효능군 예측 소요량 산출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4
------	---------------------	-----	--------	------	--------------

1-2-2	의료용 마약류 신규 허가·공급물량 통제	식약
	○ 효능군별로 제조·수입량 배정 및 신규 허가 원칙적 제한	

1. 과제 목표

- 의료용 마약류 신규 허가 제한 유지 및 수요 예측형 공급 체계 확보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과제 내용) 현재의 허가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별 수요 예측에 따른 제조·수입량 배정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 신규 허가 제한 추진(상시)
 - 의료용 마약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공급부족·신규 오남용 방지 제형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제조·수입량 배정
 - 오남용이 지속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는 사전 예측 소요량을 근거하여 제조·수입량 배정 추진
 - * 식욕억제제는 기존대로 배정을 추진하고, 수요 예측량이 나오는 효능군부터 순차적으로 제조·수입량 배정 추진 예정이되, 효능군별 배정 필요 여부 검토 필요
 - 식욕억제제 제조·수요량 수요 조사(7월)
 - '26년도 식욕억제제 배정 추진(9월~)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의료용 마약류 신규 허가 제한 지속 추진
 -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별 수요 예측량 산출 → 제조·수입량 배정
 - * 순차적으로 제조·수입량 배정 추진 예정이되, 효능군별 배정 필요 여부 검토에 따라 변동 가능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4
			박미영 사무관		043-719-2801

1-2-3	원료물질 반복·지속 구매자 관리 강화	식약
	▶ 마약류 원료물질 거래를 전산화하고 비정상적 구매 패턴 파악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후 감시	

1. 과제 목표

- 마약류 원료물질의 구입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 제재 조치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마약류 원료물질 유통관리 전산화
 - * 前업체별 제조, 수출입·수수·매매 기록 관리 → 後전산시스템 입력 및 모니터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사용자 및 발생 보고자료 규모 및 외부연계 등 파악(6월)
- 관계자 교육 등 소통강화를 통한 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 사회기반 마련
 - 사용자, 발생 보고자료 규모 및 외부연계 등 파악(3월~) → 취급자 의견조회(4월) → 시스템 전문가 자문(5월)
 - * 향후 '원료물질 보고시스템 개발(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의무대상 범위(대상물질, 보고 의무자)·실효적 관리 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매자 관리방안 및 법률 개정안(필요시) 마련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파일럿 시스템 구축 → 1차 시범사업 → 사업결과를 근거로 시스템 안전화, 법령 개정 추진 → 2차 시범사업 → 시스템 구축·운영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미영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1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은혜 연구관		043-719-2898

1-2-4	빅데이터 활용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 감시	식약
	▶ 점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변수를 고려한 의료 기관 대상 핀셋 점검 실시	

1. 과제 목표

-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 예방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과제 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사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오남용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고도화 및 집중화
 - (점검대상 선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 오남용 우려 감시대상 선정 정교화
 - * 처방량, 처방건 등에 추가로 품목허가사항, 안전사용기준 등을 벗어난 처방의 반복 또는 지속 등 종합적·전반적 처방사례를 분석
 - ※ 점검대상 선정 시 의료기관(의사) 처방 현황 중심에서 환자 개인별 처방 현황까지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과도하게 적정 수준을 벗어난 사례의 점검대상 누락 방지
 - (중점 점검주제 선정) 효능군별(성분별) 특성을 감안하여 오남용 취약계층 및 위험군 중점 점검
 - ① 최근 청소년층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 우려 여론을 반영하여 청소년 등 젊은층 대상 오남용 의심 사례 집중 점검
 - *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3년 새 49% 급증(서울신문, '24.1.21.)
 - * 경기도 화성시 실태조사 결과 중학생 8.3%가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뉴스원, '24.11.18.)

② 의사 셀프처방을 통한 오남용 의심 사례 지속 점검

- * 마약류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처방해 복용한 의사(뉴스원, '24.10.24.)
- *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검거...주사기와 바늘 발견(MBN, '24.11.18.)

③ 건강보험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의 오남용 의심 사례 점검(필요시)

- (점검시기 선정) 효능군별로 점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점검 주제별로 점검시기 설정하여 시의성 향상

- * (예) 하절기·휴가철 전 식욕억제제 점검, 수능 앞둔 기간 ADHD 치료제 점검 등

□ 의료용 마약류 관계기관 등 합동 지도·점검 강화

- (협업 강화) 수사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례 협의 추진

- * 연 2회(잠정 / 상반기, 하반기) 정기 협의회 개최

- (감시역량 강화) 마약류감시원 및 경찰청 관계자 대상 점검 사례 공유 및 상호 교육

- * 2월(잠정, 지방청·지자체 마약류감시원 등), 6월(잠정, 경찰청 관계관 등, 협의 필요)

□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합동점검 추진

〈세부 추진 일정〉

- 협업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상·하반기, 필요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진통제 등) 기획합동점검(3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식욕억제제 등) 기획합동점검(6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마취제 등) 기획합동점검(9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ADHD치료제 등) 기획합동점검(11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오남용 감시시스템 고도화(계속)

-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연계 정보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AI 기반 오남용 예측 모델 활용 확대로 오남용 사전 예측 강화

- 관계기관 합동점검 협업체계 강화(계속)

- 정례협의를 통한 안전 공유 및 협업방안 지속 협의

담당부서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영희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32
------	---------------------------	-----	---------	------	--------------

1-2-5	환자 처방 이력 확인 성분 확대	식약
	▶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와 공공정보 연계 강화	

1. 과제 목표

- 마약류 처방단계에서 오남용을 원천 차단해 근절할 수 있도록 중독성·우려 성분에 대한 투약내역 자동 확인 체계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 (과제 내용) 마약류 처방단계에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사전에 자동 확인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근절

3. 2025년도 시행계획

- 오남용·중독 우려 정도,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의료단체와 투약내역 확인 성분·제형 확대* 논의(연중)

*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4개 성분), 최면진정제(졸피뎴)

- '24년 의무화 대상인 펜타닐 정·패치의 사용량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효과성 평가

- 성분별 처방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마련 및 배포(6월)

- 처방단계에서 오남용 사전 방지를 위해 자율적 투약내역 확인이 이뤄지도록 처방SW 개발 지원계획 수립

- 처방 SW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분별 '연계조회시스템 개발 가이드' 마련·배포
- 중독 우려가 높은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연계조회 시스템 개발·적용 지원

* 펜타닐: 2,885개소 → 메틸페니데이트: 6,809개소 → 식욕억제제: 26,724개소(누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우려 환자 평가 및 정보 제공 고도화(12월)

- 오남용 여부 확인에 유용한 공공정보 연계·분석을 통해 환자의 오남용 정도를 평가 및 처방 시 투약내역과 함께 제공

□ 제도 관련 상담 인력 운영, 질의응답집 마련 및 설명회 개최(연중)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오남용·중독 우려 정도,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투약내역 확인 성분·제형 단계적 확대
 - 의료기관 대상 마약류 처방 전 투약내역 자동 확인을 지원하고, 시스템 사용 실태를 고려해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 제도 이행을 제고 및 오남용 사전 차단을 위해 '투약내역 확인 성분·제형' 확대에 관한 법적 근거 개정 추진

※ (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졸피뎀 등 추가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	---------------------	-----	---------	------	--------------

1-2-6	환자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확인 강화	식약
	▶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 신분 확인 후 처방 권고	

1. 과제 목표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비급여 처방 시에도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권고

2. 과제 내용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본인 확인 등을 '안전사용 기준'에 반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제·개정을 위한 연구사업(9월)
 -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기본 원칙 항목을 신설
- 안전사용 기준 개정(안) 전문가 협의체(11월)
-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제개정 추진(12월)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른 환자 본인확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	---------------------	-----	---------	------	--------------

1-2-7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감시 강화	식약
	▶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 감시 강화	

1. 과제 목표

-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 예방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 (과제 내용)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감시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 (데이터 분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통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 현황 모니터링
 - (정보공유) 관내 동물병원 자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통 추출 데이터 등 관련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
 - * 동물병원 마약류 공급 내역 및 구입·사용 등 취급 내역
-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감시 강화
 -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가 미비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 마약류 공급 내역은 있으나, 구입 및 사용 미보고, 반복 구입 후에도 사용 내역 미보고, 개연성이 낮은 취급 등
 - 관계부처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보고 기획합동점검(3월/8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및 불법 유출 의심 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점검

담당부서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영희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32
------	---------------------------	-----	---------	------	--------------

1-2-8	동물용 마약류 투약 수의사 교육·관리 강화	
	▶ 마약 투약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실시	농식품
	▶ 동물병원 대상 철저한 의무기록 등 교육·관리	식약

<농림축산식품부>

1. 과제 목표

-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적 반입·반출 방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수의사법」(제34조 연수교육), 「동물사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식약처)
- (과제 내용) 수의사 연수교육(의무사항)을 통해 동물에 사용되는 마약의 적절한 관리 방법과 투약 기준 교육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동물용 마약류 사용 안전 사용 교육' 세부 계획 수립 및 승인(2월)
 - 연수교육 필수 교과로 지정, 지부별 최소 1시간 교과로 편성
 - * 「동물보건의료인력양성」 사업 기본계획 승인(24.12) → 주요 교육 내용 등 세부계획 승인(2월)
- 전국 임상 수의사 대상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3월~12월)
 -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 활용, 지부별 연수교육 실시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수의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오남용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 추가 발굴*(지속),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 최신화

* 대한수의사회, 식약처 마약관리과 등 참여한 동물용 마약류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 (현재) 마약류(1종), 향정신성의약품(5종) 규정 → (향후) 위험도 따라 종류 및 기준 개편

<식약처>

1. 과제 목표

-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과제 내용)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내역에 대한 의무 기록 관리

3. 2025년도 시행계획

-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 관련 의무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관리(연중)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수의사 대상 교육(개설허가 시 1회)을 위한 마약류 취급보고 절차·방식 관련 온라인 강의교재 마련·배포(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보고 및 불법 유출, 오남용 방지 교육(계속)

담당부서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이재명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652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수 사무관		043-719-2892

1-2-9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	식약 대검
	▶ 반복·지속 적발 건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과제 목표

-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 예방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오남용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단속 강화
 - 도난·분실 이력 업체(1월) → 취급보고 미준수 의심 업체(3월) →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사례(6월) → 타인 명의 도용 의심사례(9월) → 언론 이슈 불법취급 사례(필요시)

점검주제(안)	점검방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및 타인 명의 도용 의심 사례 • 도난·분실 신고 이력 업체(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등) • 구입, 사용, 폐기 등 취급 보고 의무 미준수 의심 업체(의료기관, 약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재고량 관리 등 • 기타 불법 취급 관련 언론 이슈 등 발생 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합동점검) 관계 부처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주요 사안 등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 위반 의심 및 불법 유출 정황 등 사안에 따라 기획합동 점검 추진 • (지자체 점검)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반사항 상시 관리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위험성이 크거나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영희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32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2

1-2-10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도입	식약
	▶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	

1. 과제 목표

- 식약처 특사경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식약처 특사경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3. 2025년도 시행계획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2월)
 -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식약처·소속기관 공무원 추가하여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
 - * 특별사법경찰관은 삼림, 해사, 전무, 그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 실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단속 사무 •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단속 사무 •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 • (추가) 의료용 마약류 단속 사무

- 의료용 마약류 수사기법 교육 강화
 - 마약류 범죄 전문 수사기법 교육을 위해 마약 범죄 관련 유관기관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등)과 협업 강화(2월)

담당부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서동훈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1063
------	----------------------	-----	---------	------	--------------

1-2-11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이드라인 제시	식약
	▶최초처방, 장기간처방 등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 개정	

1. 과제 목표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원칙인 최초 처방 기간, 연령(미성년자, 고령층 등)별 주의사항 등을 안전사용 기준에 추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식약처지침)
- (과제 내용)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개정을 통한 전주기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적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제개정을 위한 연구사업(9월)
 -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기본 원칙 항목을 신설
 - 최초 투약 시 처방기간, 장기간 처방 시 유의사항, 연령별(미성년자, 고령층) 주의사항, 환자 본인 신분 확인 운영방식 등 연구사업

구분	주요 내용
최초 처방	▶저용량·단기처방 권고
장기간 처방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
미성년자	▶처방 제한기준 제시(저용량 단기간 사용 등)
고령층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
신분 확인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처방 시 신분 확인하도록 권고

- 안전사용 기준 개정(안) 전문가 협의체(11월)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개정안 마련(12월)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	---------------------	-----	---------	------	--------------

1-2-12	의사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	식약
	▶ 의사 셀프처방 금지 성분 지정 및 단계적 확대	

1. 과제 목표

- '프로포폴' 성분 외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 등을 셀프 처방 금지 성분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단체 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4(2025.2.7. 시행)
- (과제 내용) 의사 셀프 처방 금지 제도 시행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오남용 관리가 이뤄지도록 의사 셀프처방 금지 성분으로 '프로포폴' 지정 및 홍보(2월)
 -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대상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 배포 및 의사 대상 모바일 문자 발송(1월)
 - 프로포폴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집중 홍보(1~2월)
 - 처방소프트웨어·의학전문매체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 지속(1월~)
-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 셀프 처방 금지 시스템 개발 및 의료기관 배포 독려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1월) 및 시스템 개발·배포 지원(2월~)
- 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자에 대해 현장 점검·고발 등 조치(식약처 오남용감시단, 지자체)
-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셀프 처방 금지 성분 확대를 위한 협의 추진(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의사 셀프 처방 금지 성분 대상 지속 확대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	---------------------	-----	---------	------	--------------

1-2-13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에 처방 사실 고지 및 안전 정보 제공 강화	식약
	▶ 대국민 소통 채널을 통해 환자의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	

1. 과제 목표

- 대국민 소통 채널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인지하고 자기주도적 통제에 나설 수 있도록 처방사실 및 예방 정보를 제공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4항, 제5항, 제44조 및 시행령 제5조
- (과제 내용) 대국민 소통 채널*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정보 제공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행안부 주관)

3. 2025년도 시행계획

- 대국민 소통채널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정보 등록을 통한 정보 제공
 - 정보 제공을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시스템 기능 개발 추진(7월)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제공(12월)
- 마약류를 처방받은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 복용사실, 부작용 등 허가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 의사 투약, 약사 복약지도 시 ‘국민비서’ 가입, ‘마약류안전사용도우미 앱’ 설치 안내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 반영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대상 항목 추가 발굴을 통한 정보 제공
 - 마약류안전사용도우미 앱 內 “내투약이력”을 안전사용기준 및 허가사항 연계 조회, 개인 건강기록(체중, 수면기록 등)과 연계한 정보 분석 제공을 통해 활용도 제고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은혜 연구관	전화번호	043-719-2898
------	---------------------	-----	---------	------	--------------

	신종마약류 표준품 선제적 확보	
1-3-1	▶ 신종마약류 및 대사체 표준품 조기 확보	국과수
	▶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확보	식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과제 목표

- 신종 마약류 조기 탐지 및 대응 체계 구축
- 국내 유입 및 토착화 우려 마약류의 검출 효율화를 통한 보다 촘촘한 신종 마약류 감정 인프라 구축의 토대 마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국내 유입 및 토착화 우려 신종 마약류 및 그 대사체 표준품의 신속한 확보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신종 마약류 국내 유행 예측 및 대응 우선순위 선정
 - 통계 분석을 활용, 국내 마약류 남용 동향 파악 및 관련 내용을 유관 기관과 공유
 - 국과수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응 전략 마련
- 국외 시판 신종 마약류 및 대사체 표준품 조기 확보
 - 다빈도 검출 신종 마약류 및 그 대사체 우선시 한 표준품 확보
 - 표준품 확보 예산 별도 편성 추진을 통한 적극적·안정적 마약류 감정 환경 조성 노력
- 신종 마약류 분석법 확립 및 라이브러리 구축
 - 신종 마약류에 대한 고효율 분석법 개발 및 표준화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신종 마약류 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확보된 신종 마약류 표준품, 라이브러리 및 분석법을 관련 기관과 공유
- 지속적인 대사체 표준품 확보 추진을 통한 신종 마약류 분석 역량 강화 및 안정화

<식약처>

1. 과제 목표

-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확보를 통한 마약 검사 및 수사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한 표준품 선제 확보

3. 2025년도 시행계획

- 임시마약류 20종, 마약류 40종 표준물질 합성 후 타 검사기관 (대검찰청, 관세청, 국과수) 분양 지원
 - 아세틸펜타닐 등 2종의 펜타닐 유도체와 부토니타젠 등 11종의 니타젠류 마약을 포함한 60종 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 표준물질 합성사업 계약 체결(3월)
 - 표준물질 합성 중간점검 및 전문가 자문회의(7월)
 - 표준물질 합성 최종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11월)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표준품 매년 60종 합성

담당부서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자	박수정 연구관	전화번호	043-719-5203
	마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지영 연구관		033-902-5454

1-3-2	표준품 확보 물질 동시 분석 기술 개발·적용	식약
	▶ 식품 중 마약류 200여종 동시분석법 확립 및 신종 마약류 탐색 플랫폼 구축	

1. 과제 목표

- (신종)마약류 마약류 동시분석법 확립 및 분석플랫폼 구축을 통한 마약 검사 및 수사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신종 마약류의 신속 탐지를 위한 동시분석법 확립

3. 2025년도 시행계획

- 질량분석기(LC-MSMS, GC-MSMS)를 이용한 식품 중 마약류 200종 동시분석법 및 핵자기공명분광기(NMR)를 활용한 식품 중 마약류 비파괴분석법 확립

* 마약류 분석법 관련 착수보고회(1월) → 마약류 분석법 관련 중간보고회(6월) → 마약류 분석법 확보 및 검증(10월) → 검사기관 마약류 표준물질 분양(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에 혼입된 국내·외 다빈도 검출 마약류 분석법 확립('26~'27)
 - 식품에 혼입 마약류 200여종 동시분석법 및 소형 핵자기분광광도계(NMR)을 이용한 정밀 검사법 개발 추진
 - * 과제명 : 식품 혼입 마약류 동시분석법 확립 연구('24~'28, 19억, 덕성여대)
 - * 과제명 : 식품 중 마약류 비파괴분석법 확립 연구('24~'28, 29억, 부산대)
- 인공지능 활용 미규제 신종마약류 탐색을 위한 플랫폼 구축(~'28)
 - 동시분석법 개발 시 도출된 질량분석 스펙트럼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통합하여 미규제 신종마약류 탐지
 - * 개발된 플랫폼을 현재 운영중인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KIND)에 탑재 예정

담당부서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자	박수정 연구관	전화번호	043-719-5203
------	-------------------------	-----	---------	------	--------------

1-3-3	표준품 미확보 물질 탐지 기술 개발	국과수
	▶ 첨단 기술을 활용, 신종 마약류의 구조 변화 및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 표준품이 확보되지 않은 신종 마약류 탐지 기술의 고도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빅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플랫폼과 첨단 기기 분석 기술을 융합하여 신종 마약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신종 마약류 탐색역량 강화 및 효율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마련(11월)
 - 자체 개발한 신종 마약류 통계 시스템*을 통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탐색
 - *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통계용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스템, 현재 마약류 감정 백서 작성 등에 활용 중
 - 탐색된 신종 마약류의 대사 패턴을 예측 및 개발된 플랫폼에 등록, 신속 검출에 활용
- 고해상도 질량분석기(HRMS,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로 획득한 데이터를 플랫폼과 연계하여 신종마약류 탐색 기술 고도화(11월)
 - * 소변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을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초정밀분석 가능한 장비
 - HRMS를 통해 얻은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기술 확보, 가공한 데이터의 플랫폼 연계를 통해 생체시료 중 신종 마약류의 신속 스크리닝
 - 국과수 자체 연구과제를 통한 신뢰성 검증 및 알고리즘 최적화

담당부서	마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조지영 연구관	전화번호	033-902-5454
------	--------------------	-----	---------	------	--------------

1-3-4	마약지문 DB 구축·공유	대검
	▶신종 마약류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국내외 기관간 정보교류 강화	

1. 과제 목표

- 국내 유통·사용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 마약류 제조 등 밀반입 국가들과 분석정보 공유하여 효율적 국제공조 실행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유엔범죄사무소(UNODC), 마약류 분석결과를 주요 마약류 밀반입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검토

* 제안 사업명: Forensic Intelligence Network for Drugs – Asia Pacific(FIND-AP)

- (과제 내용) 주요 밀반입국인 동남아 국가들의 마약류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마약류 유통경로 추적 방안 검토

3. 향후 계획

- 주요 밀반입 국가들의 정보 공유 방안 검토

담당부서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대검찰청)	담당자	김진영 보건연구관	전화번호	02-3480-2152
------	----------------------	-----	--------------	------	--------------

1-3-5	수사·분석기관 간 신종마약류 검사정보 공유	식약
	▶ 유관부처의 신종마약류 검사정보를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공유	

1. 과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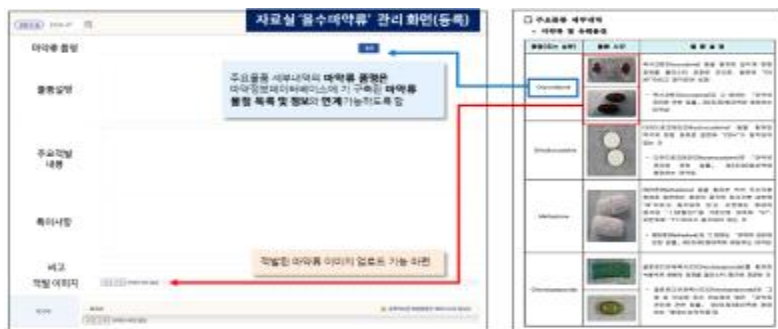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KIND*)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검사 및 수사 지원
 -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Korean Integrated Narcotics Database, 이하 KIND)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관련 부처간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웹 기반 공유체계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유관부처 간 신종마약류 수사 및 분석 관련 정보 공유(상시)
 - 대검찰청, 관세청, 국과수 등 관련 부처에서 확인된 신종마약류 관련 정보를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 마약류(유통마약류, 몰수마약류 등) 출현 정보 실시간 공유
 - * 현재 마약류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몰수마약류 관련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적발 내용, 특이사항, 적발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고, 보고서를 파일형태로 업로드 가능



<자료실 '유해물질' 등록 화면 구성>

- 신규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정보 등의 업데이트(상시)
 - * 50종 이상의 마약류에 대한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 약리·독성 정보, 분석정보 등을 업데이트
- UNODC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신종마약류 발생정보, 전세계 국가별 발생빈도, 연도별 추이 등 정보 업데이트(상시)

담당부서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자	박수정연구관	전화번호	043-719-5203
------	-------------------------	-----	--------	------	--------------

1-3-6	해외 신종마약류 정보수집 역량 강화	
	▶ 해외 신종마약 정보 모니터링 강화	국과수
	▶ 마약류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종마약류 정보 상호교류	식약

<국과수>

1. 과제 목표

-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종마약류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
- 국외 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종마약 국내 유입 사전 대응 체계 마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 국외 신종마약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 통제 대상물질 모니터링 강화로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 전 선제적 입법 대응 기반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외 신종마약 조기경보 시스템 정보 모니터링 강화
 - 국제기구*를 통한 신종마약류 상시 모니터링·정보수집
 - * 국제연합 마약범죄 사무국(UNODC), 유럽약품중독감시센터(EUDA), 포렌식과학교육연구센터(CFSRE) 등 해외 조기경보 시스템
- 아시아법과학총회(AFSN) 개최를 통한 아시아지역 마약류 정보 공유
 - 아시아권 마약감정 분야 리더로서 국과수의 위상 확립
 - 아시아 국가 간 분석 기술 교류 증진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국과수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학회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심도있는 마약류 정보 교류
 - * ▲UNODC, DEA 등 국제기관과 정기적 정보 공유 체계 마련
 - ▲해외 연구자 및 감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최신 분석 기술 확보
 - ▲해외 신종마약 검출 정보 및 유통 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 평가
 - ▲해외 신종마약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감정기법 및 표준품 확보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국제 및 국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신종 마약류 정보 수집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 (과제 내용) 신종마약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마약 관련 국제기관(UNODC 등) 및 국내기관(대검, 경찰청, 국과수 등)과의 상호 정보교류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MOU 체결에 따른 글로벌 협력 연구
 - 신종마약류의 정보공유, 국내외 검출사례,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협력
 - * 과 제 명 : 마약류 의존성 평가시험 가이드라인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UNODC와의 글로벌 협력 연구('24~'28, 8.8억원)
 - ** 추진현황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업무협력 체결('23.9), 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의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체결('24.12)
- 국외 마약류 관리 및 최신 연구 동향 공유 국제심포지엄 개최
 - UN, EU, 미국, 일본 등의 마약 규제 및 연구분야의 최신 동향 파악 및 관련 네트워크 마련
 - * 참여기관 : UNODC, EUDA(European Union Drugs Agency), 국과수, 대검 등
 - ** 과 제 명 : 신종마약류의 마약류 지정을 위한 의존성 평가 연구('25~'27, 12억원)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국내외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마약류 관련 정보수집 역량 강화

담당부서	마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조지영 연구관	전화번호	033-902-5454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수정 연구관		043-719-5203

1-3-8	하수역학 DB 확대 및 인구 특성 자료와 연계	식약
	▶ 비표적 결과의 후향적 검토를 통한 물질 관리 및 인구 특성 등과 조사결과 연계분석	

1. 과제 목표

- 마약류 불법 유통경로 및 신종마약류 탐지를 고도화하여 범죄 확산 방지 및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 마약류 안전정책 수립에 활용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신종 마약류 사용 경향성의 선제적 파악을 위한 하수역학 분석 DB 확대 및 인구 특성 자료와 연계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모니터링) 하수분석 지속·데이터 확보, 의료용마약류 사용량과 비교하여 추정량 보정, 사회통계 전문가와 조사방안 기획, 정성분석 결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경향성 있는 물질의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하수종말처리장 외 2개 도시 대상 상위 배수분구(유흥업소, 병원 등 다빈도 또는 고농도 발생 예상 지점 선정) 추가 시험 분석 실시
 - * 검출 성분 16종에서 200여종 동시 분석으로 확대
 - ** 조사지역 선정 및 착수보고회(3월)→ '24년 조사결과 발표(6월)→ 관계기관 정보지 배포(8월)→ 국제회의 참석(9월)
- (고도화) 하수분석보다 과학적인 방법 고안(예. 소변을 통한 사용량 추정 등), 의미있는 결과(성과) 도출을 위해 물질별 사범수, 인구 특성 정보 등 조사결과 연계분석
 - 마약류 중독자 대상(100여명) 코호트 연구를 통한 불법·신종 마약류 사용 실태 예측
- (활용성 제고)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 자료 개발, 조사결과 공개·제공으로 대국민경각심 제고, 수사기관 인력·자원의 집중이 필요한 지역, 물질 선정 등 수사활용
 - * (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증가된 코카인의 유럽 내 유입량 사전 파악·경고, (호주) 마약 종류별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미영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1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수정 연구관		043-719-5203

1-3-9	통제물질 지정·공고제로 전환	식약
	▶ 임시마약류 구분 및 재지정 기한 삭제, 신종물질 모니터링 체계 마련	

1. 과제 목표

- 신규 마약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임시마약류 구분·지정기한 폐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과제 내용) 선제적인 신규 마약류 통제 관리 체계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 추진을 위한 절차 개선(연중)
 - 위해 우려 물질은 신속한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신속한 지정 후 관련 물질에 대한 정보평가를 상시 추진
 -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지침) 개정 추진
- 3년 주기 임시마약류 구분 및 지정기한 폐지 추진(3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해외 동향(위해정보), UNODC·EUDA 등에 보고되는 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 게시·공유(관련 부처)
 - 신규물질 중 국내 반입시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시마약류로 지정
- ※ (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5년~)
 - 임시마약류 구분 및 지정기한 삭제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4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수정 연구관		043-719-5203

1-4-1	다른 범죄 실행 목적으로 한 마약류 사용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대검
	▶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를 엄단 하여 이를 예방하고 근절	

1. 과제 목표

-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사용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 제고 필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 현행 특가법 제5조의2에 의하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목적 범죄(재물 취득, 살해)에 따라 가중처벌
- (과제 내용) 마약류 사용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요 범죄(성폭력, 폭력, 교통사고 등)를 가중처벌하여 주의의무 촉구 및 범죄 예방

3. 2025년도 시행계획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개정
 - 현재 마약류 가액에 따라 마약사범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목적 범죄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추가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관련 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	---------------	-----	---------	------	--------------

1-4-2	투약 의심 운전 · 운항자 검사 · 단속 근거 마련	
	▶ 약물 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경찰
	▶ 마약류 투약 운항자에 대한 단속 규정 강화	해경

<경찰청>

1. 과제 목표

- 음주운전과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유사한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2. 2025년도 시행계획

- 약물운전 처벌강화와 함께 약물운전 의심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마련하여 현장 단속권한 강화 추진

<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제안자	제안일	주요 내용
김도읍의원	'24. 6. 21.	▶ 약물운전 처벌 수준 상향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 김도읍의원안 :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 한정애의원안 :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한정애의원	'24. 6. 26.	
서명옥의원	'24. 10. 4.	▶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 상세규정 마련 - 검사 불응 시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처벌

- △ 약물운전 처벌수준 △ 약물검사 불응시 처벌 등 국회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 추진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국회 발의된 개정안 심사 시 수사현장 의견 반영 추진

<해경청>

1. 과제 목표

-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약물투약 운항자(지시자) 단속 규정 마련

2. 과제 내용

- 음주 항해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상 법적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마약류 단속관련 제도는 미비
 - 해양의 경우 다중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상 행동자 등에 대한 마약류 단속 제도 개선 필요

마약류 투약 운항자(지시자)에 대한 현행 단속 규정

- ▶ 「해상교통안전법」 등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단속 규정은 미비하여 마약류 투약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음

✓ **음주 운항**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상이, 측정에 응할 의무 부과

✓ **약물 운항** 투약 후 조타기 조작 및 지시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은 있으나, 검사 불응에 대한 강제 근거 미비

※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같은법 제112조(벌칙)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2025년도 시행계획

- (법률 개정) 「도로교통법」 법률 개정 시점에 맞추어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유·도선법」 등 소관 부처(부서) 협의, 입법 발의(연중)
- (행정처분)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직원법」, 「도선법」 등 약물에 의한 조정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추가 검토 협의(연중)

* 운항 중 음주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 받는 경우 면허 취소 조항 有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관련 법령 개정·시행 및 제도적 미비점 발굴 및 개선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경찰청)	담당자	경감 김현민	전화번호	02-3150-0597
	형사과 (해양경찰청)		경감 김주화		032-835-2261

1-4-3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에서의 외국인 마약 투약·소지 단속시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합동 단속	법무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을 통한 마약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참여	

1. 과제 목표

- 외국인 대상 마약 투약·유통은 주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 외국인만 출입 가능한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업소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점검 등 필요

2. 과제 내용

-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시 외국인 특성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력 필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외국인 주요 운집장소*에서의 마약사범 단속·적발 시 관계기관별 권한에 맞는 역할 및 협력 필요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외국인 밀집지역 등

- (경찰 등 수사기관) 합동단속 시 간이 검사 등 외국인 마약 혐의 수사 및 현장에 있는 내국인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법무부) 마약 사범 관련 정보 제공,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 (체류자격·기간, 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수사기관 형사처벌 등 사건 종결된 마약사범에 대한 강제퇴거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 사범 집중단속을 위한 정부합동단속 실시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담당자	김택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82
------	----------------	-----	---------	------	--------------

1-4-4	마약류 분류 등 안전관리 체계 적정성 검토	식약
	▶ 약물 남용 위험성 및 의료적 사용 여부 등에 따른 분류 체계 도입 검토	

1. 과제 목표

- 오·남용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분류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 규제범위의 국제조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분류 등 안전관리 체계 적정성 검토, 필요시 분류체계 등 개편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내외 마약류 분류체계 현황 및 특성 등 종합·분석
 - 국내 마약류 종류별 처벌 규정의 정합성 검토(2월~)
 -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도 조사(상반기)
 - * 기원에 따라 마약(가목 내지 마목),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분류되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만 위해성 및 의학적 사용 가능성에 따라 가목 내지 라목으로 분류
 - 해외 주요국의 분류 체계 및 분류에 따른 관리현황·처벌규정, 국내 규정과 비교시 장단점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마약류 분류 체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추진(3월~)
- ※ (입법) 마약류관리법 개정(제2조 정의)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현황 및 약물 특성 종합·분석 → 규제 적정성 검토 → (필요시) 추가연구 및 재정립 방안 마련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미영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1
------	---------------------	-----	---------	------	--------------

1-4-5	오남용 위험 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식약
	▶ 성분별·분야별 규제 적정성 검토 및 관리체계 마련	

1. 과제 목표

- 비(非)마약성 오남용 우려 물질 등에 대한 오남용 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시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비(非)마약성 오남용 우려 물질 등에 대한 오남용 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주요 오남용 성분 선정 및 개별 관리 방안 마련·시행
 - 오남용 방지를 위한 판매계획 등 마련을 위한 관계 업체 및 관련 부처·단체 협의(1월)
 - 제도 변경시 현장의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도매협회, 의사협회, 병원약사회 등)와 협의(3월)
 - 이상사례 지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분별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수집(연중)
- 오남용 우려 약물의 관리방안·체계 구축 필요성 검토(3월~)
 - 오남용 우려 약물의 국내·외 관리현황, 약물 특성 종합·분석, 성분별 규제 적정성에 대한 검토(필요시 연구사업)
 - * 연구사업 진행 시 마련된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 (입법) 필요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별표1 내지 별표7의2) 개정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오남용 우려 성분들의 국내외 관리·오남용 현황 및 약물 특성 종합·분석 → 성분별 규제 적정성 검토·방안 마련 →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검토·방안 마련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미영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1
------	---------------------	-----	---------	------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2-1-1	지역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관리 대상 조기 발굴	
	▶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상담 매뉴얼 마련 및 방문상담 확대	식약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3→ 17개소)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 필요 대상 선제적 감지를 위해 방문상담 확대

2. 과제 내용

- (추진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내용)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관리 대상 조기 발굴을 위한 방문상담 확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상담 매뉴얼 마련(6월)
- 마약퇴치운동본부(^{함께}한걸음센터) - 방문상담 기관 연계(6월)
-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 실시(7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중독 지원 필요 대상 조기 발굴을 위한 지속 방문상담

<보건복지부>

1. 과제 목표

- 마약류 투약·중독자의 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과제 내용)^{함께}한결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관리대상 조기 발굴

3. 2025년도 시행계획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검찰, 경찰, 교도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관리대상 조기 발굴

* 교도소 마약류 수감자 집단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석방 후 지역연계 강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유관기관 협력 지속강화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이홍남 사무관		044-202-3871

2-1-2	지자체 검사·진단을 통해 치료·재활 대상자 발굴·연계	식약
	▶ 지자체에서 치료·재활대상자 발굴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연계	

1. 과제 목표

- 지자체가 마약류 검사·진단을 통해 치료·재활 대상자를 발굴, 치료·재활 기관으로 연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지자체에서 발굴한 마약류 치료·재활 대상자 중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3. 2025년도 시행계획

- 지자체에서 발굴한 재활 필요 대상자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재활서비스 제공
 - 지자체 -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연계(~3월)
 - 연계 및 재활서비스 제공(4월~)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	-----------------------	-----	---------	------	--------------

2-1-3	24시간 핫라인 운영	식약
	▶ 1342 용기 한걸음센터와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 및 타 기관 연계성 강화	

1. 과제 목표

-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출발점으로 전국 17개의 **함께**한걸음센터가 연계되는 마약류 사용자 사회재활 체계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문제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 제공
 - * (주요 상담 내용) 오남용 예방상담,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중독 관련 정보제공(치료보호 기관 안내 등),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재활프로그램 연계 등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문제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 제공(연중)
 - 사례분석회의(연중)
- 용기**한걸음센터(1342) 중심의 상시 원스톱 상담
 - **용기**한걸음센터에서 집중관리 대상은 **함께**한걸음센터, 중독자 접근성 등 필요시 타 기관 등으로도 연계 추진(1월~)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	-----------------------	-----	---------	------	--------------

2-1-4	함께한걸음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 사회 재활 수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함께한걸음센터 추가 설치	식약
	▶ 함께한걸음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복지

<보건복지부>

1. 과제 목표

- 마약류 투약·중독자의 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 (과제 내용)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추가 확대 (하반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개소 운영, '25년 신규 3개소 추가 확대
 - * 설치현황: 서울 (3), 부산 (3), 대구 (2), 인천 (5), 광주 (5), 대전 (5), 울산 (2), 세종 (-), 경기 (10), 강원 (4), 충북 (2), 충남 (2), 전북 (4), 전남 (2), 경북 (2), 경남 (6), 제주 (3)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이홍남 사무관		044-202-3871

2-1-5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강화	복지
	▶ 치료보호 종료이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종료사실 통보	

1. 과제 목표

- 수요자 중심의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 (과제 내용)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강화
 - * 본인 동의 하에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치료보호 종료 사실 통보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을 통해 치료보호 종료 이후에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지속 사후관리 추진
 -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그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 '25.2.7. 시행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홍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71
------	--------------------	-----	---------	------	--------------

2-1-6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 구분·운영 및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 완화	복지
	▶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 중독 판별기준 완화로 치료보호 활성화	

1. 과제 목표

- 수요자 중심의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 과제 내용

- ① 중독상태별로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중증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 확대·운영
경증	▶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 ② 중독여부 신속 판단을 위해, 판별기준 중 하나인 심리검사를
진단으로 간소화하는 등 판별검사 기준 완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중독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하여 치료 접근성 제고
- 치료보호기관(입원·외래) 확대와 중증 중독 치료를 위한 권역치료
보호기관(9개소) 선정·지원을 통해 인프라 강화

- 경증 중독자 치료를 위한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의 전문 치료기관 지정 기준 검토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 개정령안 시행 (2.7.)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생 략)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 진단 ----- ----- ----- ----- ② (현행과 같음)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마약류 전문 치료기관 지정
- 치료보호기관 등 대상 판별검사 기준완화에 따른 효과 등 의견수렴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홍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71
-------------	--------------------	------------	---------	-------------	--------------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2-1-7	▶ 지역 내 함께한걸음센터 중심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식약
	▶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통합사례회의 등 연계 강화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마약류 중독자에게 끊임없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함께한걸음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재활 지원을 위한 연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안 강구(6월)
- 마약류 단일 중독 및 사법 처분과 연결된 마약류 투약사범에 집중하여 사회재활 지원(중독자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포함, 7월~)
 - * (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류와 함께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을 동반하는 복합중독자 중점 지원
- 사법 처분 및 치료보호 후 지속적인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식약처 - 복지부 간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

1. 과제 목표

- 수요자 중심의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 (과제 내용) 중독 재활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및 치료재활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관리체계 및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있어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지역사회 단위 마약중독자 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함께한걸음센터) 관련 통합사례회의 등 추진 (상반기, 지자체 안내)
 - ^{함께}한걸음센터 주관 마약류 예방, 인식개선 사업 공동 추진 등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이홍남 사무관		044-202-3871

2-1-8	투약 경험자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리	식약
	▶ 사회재활 종료 이후 주기적 사후관리 강화 등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실시	

1. 과제 목표

-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3→ 17개소)에 따라 투약 경험자에 대한 주기적 관리를 포함한 매뉴얼 마련, 사후관리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투약 경험자에 대해 일괄적이고 주기적 사후 관리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전담 상담사나 지역 유관기관(보건소 등) 등을 통한 투약자 주기적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9월)
-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일관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 실시(10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매뉴얼 개정 등 지속 사후관리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	-----------------------	-----	---------	------	--------------

2-1-9	숙식형 한걸음센터 개설	식약
	▶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기반 마련	

1. 과제 목표

-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동체 생활로 안정적인 단약 환경을 제공하고, 통합적인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중독자가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더욱 다양한 사회재활 서비스를 받아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숙식형 재활센터 설치·운영
 - 여성 마약류 사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여성 중독자를 위한 숙식형 한걸음센터 우선 설치 노력

3. 2025년도 시행계획

- 성공적인 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협의를 위한 연구사업 실시
 - 연구사업 계획수립 및 계약 체결(3월), 센터설치 타당성 조사 등(~12월)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중독자 등이 거주지역 내에서 사회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지속 확대
 - 입소하여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	-----------------------	-----	---------	------	--------------

2-2-1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복지
	▶ 마약류 사용장애 표준 진료지침 및 정신사회치료프로그램 개발	

1. 과제 목표

- 중독 상태를 다면 평가*하여 중독 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 ▲급성 중독,금단증상 정도 ▲생의학적 진단·합병증 여부 ▲정서·행동·인지 상태 ▲변화 수용성 ▲중독 재발 가능성 ▲주변 환경 등 6개 항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 국정과제 25(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혁신의료기술 개발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 국정과제 67(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 과제 내용

- 마약류 사용장애 환자 표준진료지침 개발
 - 문헌고찰을 통한 국내외 마약류 사용장애 현황조사
 - 국내외 마약류 사용장애 환자 임상사례, 특성, 치료현황 분석
 - 수용개작을 통한 마약류 사용장애 표준진료지침 개발
- 마약류 사용장애 정신사회 치료프로그램 개발
 - 정신사회 치료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필요/욕구분석
 - 임상/지역사회, 급성기/재활기 등에 따른 치료프로그램 개발
 - 치료프로그램의 유효성 검증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자 양성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연구협의체 운영(분기별)

- 연구개발과제 간 협력 및 연구성과 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한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 근거 기반의 진료지침(가이드라인) 개발(3종)

- (임상질문 영역별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외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 및 문헌 연구 및 검토를 통한 근거 기반의 체계적 접근
- (자극제 가이드라인 개발) 문헌 리뷰 및 근거의 질 평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오피오이드, 대마 진료지침 개발) 국제적으로 검증된 가이드라인의 수용개작 과정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권고사항 도출

□ 정신사회치료프로그램 개발(매뉴얼 등)

- (치료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전체 및 회기 구조, 회기별 목표와 내용, 내용의 전달 방식 등 개발, 세부화 작업
 - * (1분기) 프로그램 세부 설계 및 자료 개발 / (2분기) 프로그램 자료 고도화 및 최종화 / (3~4분기) 프로그램 파일럿 테스트 준비
- (효과성 검증)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고도화

□ 치료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 양성

- * (1~2분기) 치료자 교육과정 기본 틀, 세부 내용 정의 및 프로그램 모듈 개발
(3분기) 마약류 중독치료 현장 지도감독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교육자 양성과정 구성
(4분기) 교육훈련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 3종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 대한의학회 심사 신청, 임상진료지침 인증 평가
- 치료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시행
- 치료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전원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61
------	--------------------	-----	---------	------	--------------

2-2-2	대체 치료법 개발 지원	복지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개발	

1. 과제 목표

- 디지털 의료기기와 전자약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단약 유지가 가능하도록 대체 치료법 개발 지원

2. 과제 내용

추진 근거

- 국정과제 25(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혁신의료기술 개발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 국정과제 67(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과제 내용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 청소년 및 청년의 마약류 사용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 기기 개발 및 인허가 획득
 - 실제 사용 데이터(RWD)*를 활용한 치료기기의 실사용 검증 진행을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 제공
- * RDW: Real-World Data, 실제 사용 데이터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전자약 개발
 - 장시간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삼차신경·미주신경의 다중 뇌신경 융합 전류자극 시스템 개발
 - 중독 동물모델 기반의 갈망 및 금단 기전 분석을 통해 전자약 자극 프로토콜 최적화 기법 개발
 - 아편계 마약 중독 환자 대상 삼차·미주신경 융합 자극 전자약의 유효성 검증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허가 확보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연구협의체 운영(분기별)

- 연구개발과제 간 협력 및 연구성과 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한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 탐색임상시험 수행 및 개선사항 도출
- 마약류 사용장애 법률 및 중독 정보 콘텐츠 탑재
- 치료 콘텐츠, UI·UX* 개선 등 디지털 치료기기 고도화
* UI: 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 CRO* 컨설팅, 확증임상시험 설계, 식약처 IND** 승인 신청
* CRO: 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 위탁연구기관
**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임상시험계획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전자약 개발

- 아편계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삼차·미주신경 융합자극 시스템 개발
- 탐색임상시험 설계 및 식약처 IND 신청
- 탐색 임상시험 수행 및 중독 증상 바이오마커 발굴
- 설치류 중독 모델에서의 뇌자극 프로토콜의 유효성 확보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확증임상시험 실시
 -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 RWD*를 통한 실사용 검증
* RDW: Real-World Data, 실제 사용 데이터
 - 뇌바이오마커(fNIRS)* 활용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 기전 검증
* fNIRS: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근적외선 분광법
- 마약류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전자약 개발
 - 아편계 마약 중독 치료용 전자약 시제품 개발
 -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확증임상시험 실시
 -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 다양한 약물 중독 변수를 고려한 전자약 신경자극 치료 효과 최적화 연구
 - 아편계 마약 중독 치료용 전자약 사업화 추진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전원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61
------	--------------------	-----	---------	------	--------------

2-2-3	투약 의심자 즉시 치료 연계 현장 대응지침 마련	복지
	▶ 경찰, 소방인력대상 치료연계 대응지침 마련	

1. 과제 목표

- 적시에 중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역량 확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 (과제 내용) 투약 의심자에 대해 즉시 치료서비스 연계토록 현장 대응지침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경찰, 소방, 치료보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현장 의견수렴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 검토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가칭) 마약류 중독자 현장대응인력 지침 마련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홍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71
------	--------------------	-----	---------	------	--------------

2-2-4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 대응 강화	복지
	▶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기관 입원 지원 및 응급처치 기능 강화	

1. 과제 목표

- 적시에 중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역량 확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 * (2-2-2)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응급이송체계 확립
- (과제 내용)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기관 입원 지원 및 응급처치 기능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4월)
 -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수행기관 지정(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및 시스템 구축 착수(24.7월~)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서비스 단계적 확산
 - (서비스 시범운영) 시범지역 시스템 가동 및 시스템 안정화(2분기)
 - (서비스 전국운영) 정보시스템 전국 개통(4분기)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예산 확보 추진(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26)

* 의료기관 EMR 및 타기관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통계정보시스템(DW) 구축 등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황지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66
------	--------------------	-----	---------	------	--------------

2-2-5	의료기관 중독치료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공	복지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 확대 등	

1. 과제 목표

- 적시에 중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역량 확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 과제 내용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 운영비(총 9억원), 환경개선금(총 5억원), 우수기관 성과금(총 3억원)을 국비 100% 지원
 - 치료보호기관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치료수가 지원 현실화
 - * 마약류 중독치료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수가 개선 시범사업 추진
 - 마약류 관련 필수 치료 중 비급여* 일부 항목의 급여화 추진
 - * 마약류 진단 검사, 중독치료 약물 등

3. 2025년도 시행계획

- 권역 치료보호기관 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강화 도모
-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하반기)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마약류 중독치료 보상수가 마련 및 시행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홍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71
------	--------------------	-----	---------	------	--------------

2-2-6	마약류 치료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개발·운영	복지
	▶ 중독 치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론+실습) 개발·운영	

1. 과제 목표

- 적시에 중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역량 확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제6항 (‘24.2.7. 시행)
- (과제 내용) 마약류 치료 전문가 양성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중독의 단계 및 수준별 지원을 위한 직종별(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론, 실습) 개발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와 연계하여 마약류 중독 교육과정 신설 검토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관 선정 (상반기)
- 유관학회 자문 등을 통한 현장 적용 적합성 검토 (하반기)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직종별(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홍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71
------	--------------------	-----	---------	------	--------------

2-3-1	개인 특성·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 개발	식약
	▶ 청소년·여성 등 계층별 심리 및 건강상태와 약물별 중독성·의존성 등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 개발	

1. 과제 목표

-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중독자 개인특성, 투약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중독자 개인특성, 투약 약물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기술 개발 및 적용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맞춤형 재활기술 종사자 교육 및 시범 운영 후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실시
 - 맞춤형 재활기술 종사자 교육(~6월)
 - 맞춤형 재활서비스 실시(7월~)
 - 마약 중독 재발 모델 개발(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종사자 교육을 통해 대상자 특성 반영 맞춤형 재활기술 지속 적용

세부과제명	2026	2027	2028	2029
마약류 중독자 맞춤형 재활 기술개발	마약 중독 재활 저항성 모델 개발	마약 중독 재발/재활 관련 뇌신경회로망 선정	마약중독 재발/재활 마커 후보군 확보	마약중독 재발/재활 실용화 플랫폼 제작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수정 연구관		043-719-5203

2-3-2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식약
	▶ 중독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 적용 실시	

1. 과제 목표

-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중독자 중독 수준을 재활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중독자 중독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맞춤형 프로그램 종사자 교육 및 시범 운영 후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실시
 - 맞춤형 프로그램 종사자 교육(~6월)
 -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7월~)
 - 불법 마약류(합성 마약류 포함) 중독 신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종사자 교육을 통해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수정 연구관		043-719-5203

	가족 기능 회복 지원	
2-3-3	▶ 가족 단위 상담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로 가족 회복 지원	식약
	▶ 가족대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회복 지원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가족 회복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중독자 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안) 마련 및 실시
 - * 마약류 중독 및 재발·회복과정 이해, 다양한 상황별 가족의 대처방법 훈련, 가족 심리 상담,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3. 2025년도 시행계획

- 중독자 가족 지원안 종사자 교육 및 시범 운영 후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실시
 - 가족 지원안 종사자 교육(~6월)
 - 가족 지원 실시(7월~)

<보건복지부>

1. 과제 목표

- 개인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재활의 효과성·지속성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과제 내용) 가족 단위 상담·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로 가족기능 회복 지원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이해 향상,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마약 중독자·가족의 회복 도모

- 중독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등록관리
-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족모임 지원 프로그램, 가족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 가족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사업 규모 확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체 사례관리 대상자 대비 마약중독자 관리 규모는 약2% 수준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이홍남 사무관		044-202-3871

2-3-4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상담 확대	식약
	▶ 사회재활 전문가가 주민센터·복지시설 등을 통해 청소년 등 예방·중독 상담	

1. 과제 목표

-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3→ 17개소)에 따라 20~30대 젊은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이용 복지센터 등으로 사회재활전문가가 방문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상담 확대

* (변경 전) 청소년 대상 → (변경 후)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상담 제공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상담 확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교정시설 또는 복지시설(청소년지원센터 등) 방문 상담을 위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방문상담’ 가이드라인 마련(~6월)
- 마퇴본부 **함께**한걸음센터 - 복지시설 간 연계 협력 강화(~6월)
 - * 복지시설 이용자 중 마약류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함께**한걸음센터로 연계 등
-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지속 방문 상담(7월~)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	-----------------------	-----	---------	------	--------------

2-3-5	예방·사회재활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	식약
	▶ 예방·사회재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습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교육관리 체계화	
2-3-6	재활 전문인력 인증평가 체계 마련·운영	
	▶ 인증시험인증 인력 유지 관리 등 인증평가 체계 마련·운영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 등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등의 질적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과정 운영
 - 마약류 예방·재활 현장실습 추가 실시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1월~3월)
 - '25년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과정(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 실시(4월~)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식약처장 인증과정 필기시험(7월)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현장실습(8~11월)
 -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전문인력 배출 및 제도 평가·보완 추진(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고대웅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3
------	-----------------------	-----	---------	------	--------------

2-3-7	투약 경험자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지원	고용 식약
	▶ 함께한걸음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업 및 정보공유 연계체계 구축 및 직업재활	

1. 과제 목표

- 마약류 중독·투약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중독·투약자에게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중독·투약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 마약류 직업재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1월~)
 - 맞춤형 마약류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3월)
 - 마약류 중독·투약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류 중독 직업재활 지원(12월)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노동부)	담당자	원치욱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41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대웅 사무관		043-719-2583

2-4-1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	법무 식약
	▶ 선별(Screening)-단기개입(Brief Intervention)- 의뢰(Referral)-치료[Treatment] 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 마약류 사범의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중독 회복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조
- (과제 내용) 개인 중독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교정시설 석방 시 치료·재활이 필요한 마약류 사범은 동의 하 치료보호 의뢰 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3. 2025년도 시행계획

-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 중독자 수준에 따른 상담 방법, 상담 횟수, 재활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중독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 교정시설 석방 전 중독자 등에 대해 치료·재활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치료보호기관 및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 * 매뉴얼개발, 심리검사, 동의 등(법무부),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김도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508
	마약예방재활팀 (식약처)		이철승 사무관		043-719-2582

2-4-2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대상자 확대 및 전문가 위원회 풀 보완	식약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기소유예 대상자 중독 수준에 맞는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복지
	▶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 철저	법무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단순 처벌을 넘어선 효과적인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회복지원 및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 사범으로 대상자 확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함께}한걸음센터가 설치된 지역 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검찰과 지속 협의를 통해 모든 종류의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참여 확대
 - 지역사회 내 긴밀한 협력·소통을 위해 권역별 관계기관회의 등 추진(2~6월)
 - * 마퇴지부(주관) + 지검·지청 + 보호관찰소 + 지자체(병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중독 수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제안을 위해 운영지침 내 세부 기준 마련(6월)

-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사전평가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간담회 연 2회 실시
-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운영 사항 점검(4·10월)

* 마약류 치료·사회재활협의체 운영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 지속

<보건복지부>

1. 과제 목표

-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 및 건강한 사회 복귀 동기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국정과제 63-7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정망 강화’
- (과제 내용) 성실히 치료·재활에 임한 사범에 한해 처분을 종료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기관에서 중독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 통합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강화 (복지부)
 -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사실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통보하도록 근거* 마련 (‘25.2월)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개정 (‘25.2.7. 시행)

<법무부>

1. 과제 목표

-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마약류 기소유예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 철저, 중독 수준에 맞는 치료·재활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감독)
- (과제 내용)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류 기소유예자에게 개인별·중독수준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 관리

3. 2025년도 시행계획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의 안정적 관리
 - 마약류 기소유예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여 단약 동기 강화
 - ^{함께}한걸음센터 및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
 -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치료·재활이 지속되도록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연계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관리 강화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고대웅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3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이홍남 사무관		044-202-3871
	보호관찰과 (법무부)		이상기 사무관		02-2110-3585

2-4-3	보호관찰 대상자 수사·불시 약물 검사, 연계상담 실시	법무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및 치료적 개입 강화	
2-4-4	보호관찰 종료자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 보호관찰 종료 후 전문기관 연계	

1. 과제 목표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치료·재활 강화를 통해 재범 억제와 사회복귀 촉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감독)
- (과제 내용) ①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사·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는 전문가 심리상담 확대 ②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치료·재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강화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수사·불시 약물검사를 증대하여 관리

※ 최근 5년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약물검사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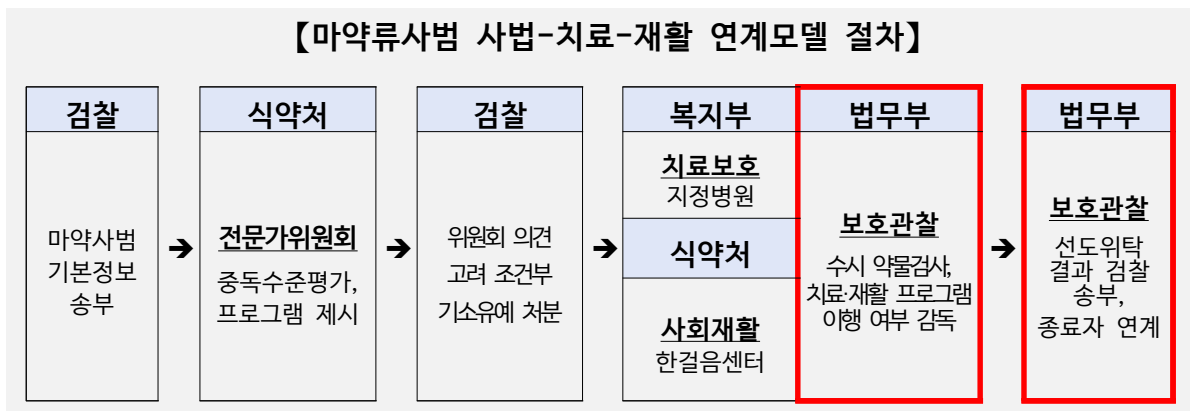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시사건	3,591건	3,675건	3,762건	4,178건	5,078건
검사횟수	16,817회	24,617회	23,789회	26,039회	32,184회

□ 지역사회 치료·재활 협업체계 구축

- 의사, 교수, 중독관리센터장 등 지역사회 중독치료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중독의 정도가 심한 대상자에게 전문가 연계상담 실시
 - ※ 17개 보호관찰소에서 157명의 전문가풀을 구성, 241명 멘토링 진행 중(누적 309명)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2024. 4.부터 전국 확대 시행)

- 마약류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관찰관은 단약 및 이행 여부를 점검
 - ※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치료·재활이 지속되도록 ^{함께}한걸음센터(전국 17개소) 연계



□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중독 심리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 ※ 2024년 보호직 37명,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누적 81명)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강화하고, 중독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를 확대하는 등 재범 예방 활동 지속

담당부서	보호관찰과 (법무부)	담당자	이상기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788
------	----------------	-----	---------	------	--------------

2-4-5	출소자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법무
	▶ 마약사범 출소 전 사회내 유관기관에 사전 사례관리 신청으로 출소 후 즉시 개입 추진	

1. 과제 목표

- 사회적 낙인과 마약류에 대한 갈망으로 직업재활 및 회복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마약사범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 협의
- (과제 내용) 마약사범 출소 시 회복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수용 중 ^{함께}한걸음센터 사례관리 사전신청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회복이음과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신청 (4월)

* 개인 심리상담, 회복 집단상담, 심리검사, 치료 연계, 자조 모임 등

- 회복이음과정 수료 1~2주 전 참여자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발송
- 출소일에 맞춰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연락 및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출소 이후 거주할 주소와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사례관리 사전서비스 신청 대상자를 기존 회복이음과정 참여자에서 기본, 집중, 심화과정 등 모든 재활프로그램 대상으로 확대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김도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508
------	------------------	-----	---------	------	--------------

2-4-6	출소자 동의 하에 유관기관 정보 제공	법무
	▶ 마약류 사범의 출소 후 개입에 필요한 정보(인적사항, 형 종료일 등) 유관기관에 제공	

1. 과제 목표

- 수용중인 마약사범의 동의 하에 출소 후에도 사회재활사업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재활 서비스와 연계하여 단약 동기를 유지하도록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2
- (과제 내용) 재활의 연속성을 위해, 수용중인 마약사범의 동의를 받아 유관기관에 인적사항, 형기 종료일, 이수명령 이행실적 등 정보 제공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교육이수 정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참고 목적
 - 석방되는 마약사범의 교정시설 수용 중 재활 프로그램 등 교육 이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회재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개인정보) 연락처, 건강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대상자에게 직접 취지 설명 후 동의*를 받아 수집
 - * 취지 설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
 - 중독자 치료·재활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대상자와 신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 재활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 1개월 전 마약사범 대상으로 ^{함께}한걸음센터 전화상담을 연결하여 정보수집 동의 및 사전 사례관리 등록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김도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508
------	------------------	-----	---------	------	--------------

2-4-7	추가 치료 필요 출소자 치료보호 의뢰 근거 신설	복지 법무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및 시행	

1. 과제 목표

- 출소 후에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민간 기관 연계 및 자립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 (과제 내용) 추가 치료가 필요한 출소자의 치료보호 의뢰를 위한 법령 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 * (현행) 석방시, 교정시설 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안내
 - (개정) 현행내용 + 중독자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 의뢰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3항 개정령안 시행 (25.2.7.)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

현 행	개 정 안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신 설>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교정시설 등 석방하는 중독자 치료보호 의뢰 동의를 모니터링 및 치료보호 의뢰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홍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71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김도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508

2-4-8	치료 결과 우수 출소자에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치료결과가 우수한 출소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
	▶ 고용센터-한걸음센터가 협업하여 치료결과 우수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안내·연계	식약

<고용노동부>

1. 과제 목표

- 한걸음센터(식약처)-고용센터(고용부) 간 연계·협업, 마약류 중독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직업안정법 제3조·제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과제 내용) 사회재활 전문가 판단하에 근로할 수 있다고 분류된 투약 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
 - 치료결과가 우수한 출소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고용센터-한걸음센터가 협업하여 치료결과 우수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직업능력 개발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안내·연계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 지원

3. 2025년도 시행계획

-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등 정보를 한걸음센터에 제공 → 한걸음센터에서 투약 경험자 등 취업상담 시 활용('25.下~)
- 한걸음센터가 고용서비스 참여 희망자 발굴 → 고용센터는 주요 취업지원제도, 고용24 이용방법 등 특강 실시('25.下~)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식품의약처 간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 결정·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마약류 중독·투약자의 취업지원 등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중독·투약자의 취업지원 등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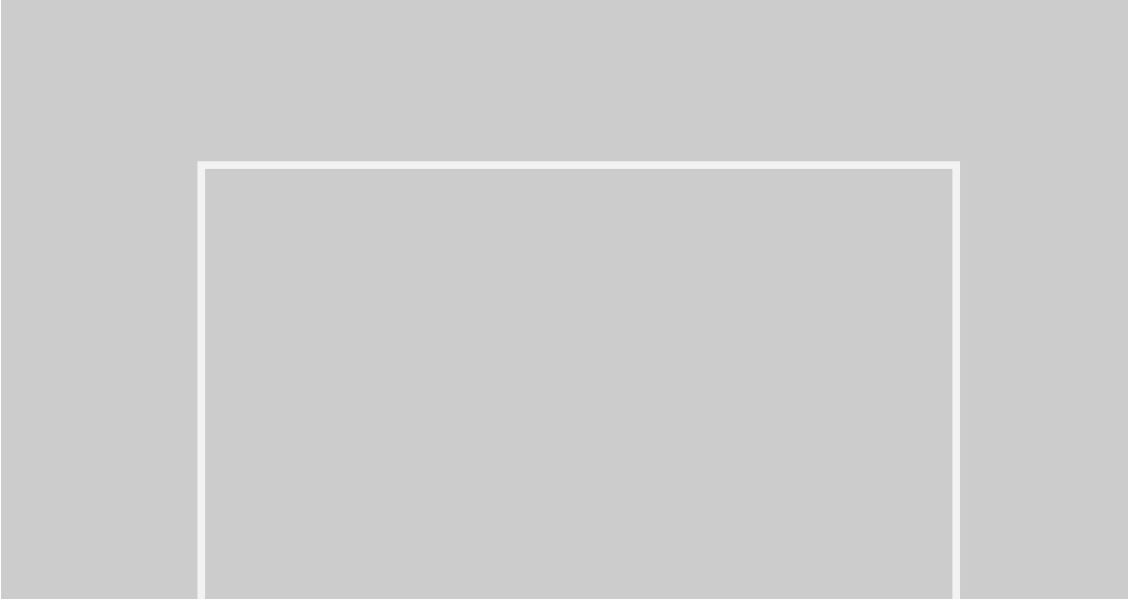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중독·투약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 마약류 직업재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1월~)
 - 맞춤형 마약류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3월)
 - 맞춤형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마약류 중독 직업재활 지원(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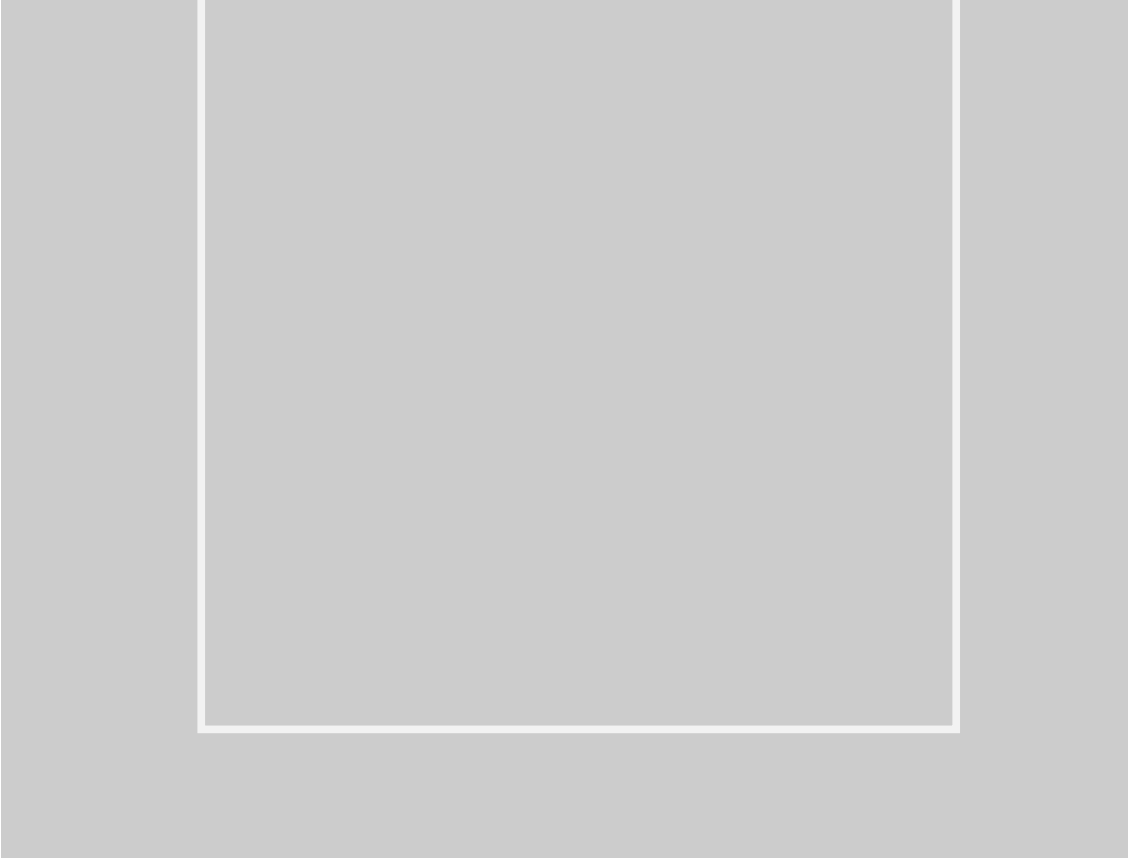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중독·투약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지속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노동부)	담당자	원치욱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41
	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윤문규 사무관		044-202-7420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대웅 사무관		043-719-258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3-1-1	▶ 마약 근절의 필요성 및 마약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체
	▶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일관된 메시지 전달	식약

<문화체육관광부>

1. 과제 목표

□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 1. 22.)

□ (과제 내용) 단계별 메시지를 담은 장기 캠페인으로 마약류 인식 전환

- '24년 캠페인에 이어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약 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 집중

※ '24년 캠페인 성과

- (내용) 아들의 꿈, 딸의 웃음을 되찾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 마약은 '나뿐만 아닌,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공포'라는 경각심 제고

	제작	광고 동영상 2편	기간	'24. 12. 17. ~'25. 1. 19.	배정 예산	7억 원
2024년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의 고통에서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 (엄마와 아들 편) ■ 마약의 고통에서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 (아빠와 딸 편) 			방송, 옥외 및 온라인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218회 ■ 유튜브 조회수 447만 회



마약, 엄마와 아들 편



마약, 아빠와 딸 편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근절 관련 인식개선 장기 캠페인 추진(8월~11월, '25년 7억)

- 마약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문제점을 조명하여 마약근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1단계 추진중)

구분	1단계('24末~'25년)	2단계('25~'27년)	3단계('28년)
목표	필요성 정립·환경조성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	자신에 대한 성찰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근절의 필요성 인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알리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의 다양한 접촉경로 (지인, 병원) 조명, 사회 문제임을 공고화 ▶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정부 대책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나'들이 가진 마약에 대한 생각 (나쁜 것) → 호기심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견 등으로 경각심 재부각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인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메시지를 통한 집중 홍보

3. 2025년도 시행계획

□ 홍보전문대행사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캠페인 추진

- 홍보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캐치프레이즈 선정 및 영상제작

□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전문적인 지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의 지속 제작·송출

담당부서	소통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박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2915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숙 사무관		043-719-2803

3-1-2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	식약
	▶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 등 홍보 효과 제고	
	3-1-3	
3-1-4	분기별 홍보 현황 점검	

1. 과제 목표

- 모든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중독도 회복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 기회가 되는 대국민 홍보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마약류 예방 퇴치 주간선포 등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홍보현황을 분기별 점검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민이 안심하는 마약청정국으로 복귀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3월)
 - **전략1**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전략2** 강의식·주의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참여형 홍보 확대
 - **전략3** 마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
-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6월)
 -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공모전 등 개최
- 부처별 대국민 홍보실적 점검(6월/11월)
 - 각 부처 홍보 콘텐츠를 ‘마약청정 대한민국’에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청정 대한민국’ 홍보 콘텐츠 플랫폼 정비 및 활성화 및 우수 콘텐츠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 배포·활용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3
------	---------------------	-----	---------	------	--------------

3-1-5	대상별 주요 활동공간에 맞춤형 메시지 홍보	식약 (문체)
	▶ 학교, 청소년 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능동적인 호응을 유도한 개인 참여형 홍보	

1. 과제 목표

- 자발적이고 롤 플레이와 환경설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험 습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홍보 활동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대상별 맞춤형 메시지를 학교,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집중 홍보

3. 2025년도 시행계획

- 청소년 맞춤형 체험 참여형 홍보콘텐츠 제작·운영(4월)
 - 일회성 캠페인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
 - 연령대에 맞는 홍보 콘텐츠 제공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전달식 홍보에서 체험형 콘텐츠 등 양방향 소통 강화
- 마약 거절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홍보
 - 개발 완료된 VR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마약의 위험성 홍보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3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지연 사무관		043-719-2589
	소통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박민수 사무관		044-203-2912

3-1-6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및 홍보대사 위촉	식약
	▶ 재할에 성공한 당사자 등을 포함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대사 위촉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홍보 추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와 홍보대사 위촉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오남용 예방 서포터즈 구성 및 홍보대사 선정
 - 대학생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2월~)
 - 진중하고 성실한 이미지와 대중에게 성실한 이미지로 신뢰를 주는 인물 중에서 예능,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유명인 선정(3월)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3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지연 사무관		043-719-2589

3-2-1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식약 (교육)
	▶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약류 접촉 혹은 중독시 대응절차 마련·안내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위기 상황별 대응방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통해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상	교육 주요 내용	교육 프로그램
초·중·고교생	중독 위험성, 올바른 거절 및 도움 요청 방법 등	강의식, 체험형(교육극, 마약버스)
학교밖청소년	중독 위험성, 올바른 거절 및 도움 요청 방법 등	온라인
대학생	중독시 피해, 상담신청 방법 등	체험형(캠페인)
군인	투약자 발견시 대처법,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등	온라인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마약류 제도·문화 차이, 중독 위험성 등	강의식, 온라인
유학생	국내외 마약류 제도·문화 및 처벌 법규 차이점 등	강의식·체험형(캠페인)
외국인	국내외 마약류 제도·문화 차이, 중독시 피해 등	온라인
직장인	중독시 피해, 회복자 수기, 상담 신청 등	온라인
해외파견자	국내외 마약류 제도·문화 차이, 중독시 피해 등	온라인
운동선수, 연예계 종사자	국내외 마약류 제도·문화 차이, 중독시 피해 등	강의식, 온라인

3. 2025년도 시행계획

- 학교밖청소년·군인·대학생·북한이탈주민 등 교재 개발 및 배포
 - 교재(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 최종 교재 확정(2월)
- 직장인, 외국인 등 대상 교육교재 개발 및 배포
 - 교육 교재 개발 위탁 용역 공고 및 사업자 선정(3월)
 - 교재(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 및 최종 교재 확정·배포(7월)
- 운동선수 대상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월~)
 - 교육 대상 특성 분석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1~2월)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		김태환 사무관		044-203-6547

3-2-2	표준 교수·학습계획안 개발·배포	교육
	▶ 학교의 급(유·초·중·고)별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 표준 지도서 개발·보급(~'25.7월)	

1. 과제 목표

- 학교의 급별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 표준 지도서 개발·보급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과제 내용)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맞춰 학교의 급별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표준 지도서 개발

3. 2025년도 시행계획

- 학교의 급별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 연루 방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용 표준 지도서 보완

* 중·고교용 표준 지도서 개발·배포('25.1월) → 유치원 및 초등학교용 개발·배포(~'25.7월)

- 식약처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문강사의 표준 강의자료와 연계하여 학교 자체 교육 내용과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25.7월)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	담당자	김태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547
------	------------------	-----	---------	------	--------------

3-2-3	예방교육 강사 활용·평가 시스템 구축	식약
	▶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인력 풀 구성, 강사 배정 및 평가	
3-2-23	평가 결과 반영 인센티브 구조 설계	

1. 과제 목표

- 전국 단위 예방교육 강사를 통해 교육 수요 충족 및 효과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활용·평가 체계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을 받은 강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풀(pool)을 구성(1월)
- 교육지원청별 전문인력 구성 및 강사 활용 안내(2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 등록·평가 관리 시스템 개선(1월)
- 강사 등록·평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방교육 후 강사 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3월~ 지속)
- 강사 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주기적인 강사 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도모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3-2-4	교원 연수과정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정례화	교육
	▶ 마약류 중독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 정례화 운영	

1. 과제 목표

- 교원 연수과정 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정례화 운영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매 3년 주기 15시간 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중독,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과제 내용) 마약류 중독 위험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과정 정례화 운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일반 교직원) 교직원 특성을 고려한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연수원을 통해 상시 운영(우선 이수 연수과정 안내)
 * 마약류 관련 법령의 이해, 마약류 중독 및 재활 회복사례, 학생 지도요령 등
- (예방교육 담당교원) 원격연수 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협업을 통해 대면 연수과정 정례 운영 추진
 * 교육 이수에 부담이 없도록 여름·겨울방학 기간 내 집중 운영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매 3년 주기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이수 조치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	담당자	김태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547
	교육안전정책과 (교육부)		김용준 연구관		044-203-6667

3-2-5	‘마약청정 대한민국’ 활용, 가정 내 온라인 교육 지원	식약
	▶ 신규 교육 영상 개발 등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3-2-6	마약 관련 검색 시 ‘마약청정 대한민국’ 파워링크 노출	

1. 과제 목표

-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한 온라인 예방교육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 온라인 교육과정 추가, 교육 사이트 연계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신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2월)
 - 유아·청소년(초급·중급·고급), 대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문
- ‘마약청정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 탭에 신규 교육 과정 추가(3월)
 - *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운영 사이트 내 ‘마약청정 대한민국’(웹 사이트·메타버스) 링크 연계로 사용자 접근성 제고(3월)
 - * 학생건강정보센터(교육부), 다이어Dream(여가부)
- 마약류 예방 관련 각종 교육·홍보 및 정책 참고자료 등 게시(수시)
- ‘마약청정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 현황 분석(매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3-2-7	보호·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주기적 배포	식약 [여가]
	▶ 학교밖청소년 등 대상 예방교육 교재 마련 및 배포	

1. 과제 목표

- 학업 중단 청소년 대상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학교밖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표준교재 마련·배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교육기관 간 연계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 교재(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 최종 교재 확정·배포(2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마약퇴치운동본부 간 기관 연계 강화
 - 여가부와 협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지침에 예방교육 관련 안내사항 등 반영(1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방교육 수요접수 및 교육 실시(1월~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여성가족부)		최요한 사무관		02-2100-6319

3-2-10	외국인 유학·취업 비자 심사 요건에 예방교육 이수 추가	법무
	▶ 유학생, 근로자 등 마약 노출 위험이 큰 외국인 대상 예방교육 이수 등 권장	

1. 과제 목표

□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마약 예방교육 이수 확대 필요

※ 2024년 11월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950명으로 전년 동기(2,888명) 대비 2.2% 증가(2024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

2. 과제 내용

□ 유학, 취업 등 사증 발급 시 마약 예방교육 이수 권장

※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는 외국인에 대한 낙인 효과 등 우려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내 입국 희망 유학생, 근로자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동영상 이수 확대

○ (법무부) 기존 제작한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동영상’을 재외공관 및 비자신청센터 등에 배포

※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단계에서 예방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권고

○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에 동영상 상영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동영상을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에 배포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김은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7
------	----------------	-----	---------	------	--------------

3-2-11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 주기적 배포	해경
	▶ 지속적 해양종사자 예방활동으로 예방 기반 강화	

1. 과제 목표

- 해양종사자 예방교육 확대('24년 932명→'25년 10%상향), 홍보물 주기적 배포('24년 1,200장→'25년 100%상향), 신입경찰관 정규과정 반영

2. 과제 내용

- 수협·조선소·어촌계 등 지역 공동체 협력 민생접점 예방 추진 및 다양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국민 예방 체감도 제고
- '25년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홍보활동 예산 : 0.72억원

3. 2025년도 시행계획

- (예방교육 확대) 한국마약류퇴치운동본부 협력 교육 대상자 연령, 국적, 사회 활동 분야 등 분석, 눈높이 마약류 예방 교육 추진(5월~)
- (현장 홍보) 홍보물·리플릿 배부 및 현수막 게시, 영상제작 등 마약류 다양한 방법의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연중)
- (내부 예방마인드 교육) 신입 경찰관 정규과정 편성 등 내부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및 예방 마인드 확산을 위해 내부 교육 확대(연중)
- (예방활동 피드백) 해양 마약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 체감도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예방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개선·발전(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25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예방 정책 수립 등 지속 추진

담당부서	형사과 (해양경찰청)	담당자	경감 김주화	전화번호	032-835-2261
------	----------------	-----	--------	------	--------------

3-2-12	주요 관광국·마약류 우범국 언어 교육자료 개발	식약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표준교재 마련	

1. 과제 목표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마약류 예방 표준교재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 교육 교재 개발 위탁용역 공고 및 사업자 선정(3월)
 - 교재(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 및 최종 교재 확정·배포(7월)
 -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 외국인 대상 교육 수요접수 및 교육 실시(연중)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3-2-13	마약류 합법화 국가 여행자 입출국 시 마약류 관련 주의·금지사항 및 처벌 규정 안내	식약 (외교)
	▶ 여행자, 해외 파견근무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1. 과제 목표

- 해외 여행자, 해외 파견근무자 대상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해외 여행자 등 대상 마약류 예방 표준교재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해외 여행자, 해외 파견근무자 대상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 교육 교재 개발 위탁용역 공고 및 사업자 선정(3월)
 - 교재(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 및 최종 교재 확정·배포(7월)
- 해외 여행자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자료 게시 협조요청(7월)
 - 해외 출국자 대상 로밍 안전문자 발송,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마약 관련 안전 공지(연중)
- 해외 파견근무자 대상 교육 수요접수 및 교육 실시(연중)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해외 마약류 합법화 동향 지속 파악 및 국내 관계기관 공유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재외국민보호과 (외교부)		노기현사무관		02-2100-8205

3-2-14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온라인 정보센터 개설	식약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처방환자가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설	

1. 과제 목표

-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의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의료용 마약류 사용시 주의사항 등 정보센터 개설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 메뉴 신설(11월)
- 마약성 진통제 등 효능군별(5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3월~11월)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자 맞춤형 투약이력 조회 기능 연계(11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별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제공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3-2-15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을 통한 직장인 예방교육	식약 [국조]
	▶ 지자체 등이 보유한 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직장인 대상 예방교육 추진	

1. 과제 목표

-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직장인 대상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직장인 대상 교육 교재(온라인 교육 영상) 개발 및 배포
 - 교육 교재 개발 위탁용역 공고 및 사업자 선정(3월)
 - 교재(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 및 최종 교재 확정·배포(7월)
-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 활용방안 등에 대해 해당 기업사와 협의 및 교육 영상 탑재 추진(7월)
- 직장인 등 성인 대상 교육 수요접수 및 교육 실시(연중)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 (국무조정실)		김기은 사무관		044-200-2889

3-2-16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 운영	식약
	▶ 전문지식 및 실습경험에 기반한 강사 전문성 강화, 식약처장 인증을 통해 자격 신뢰 제고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 등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 등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과정 운영
 - 마약류 예방·재활 현장실습 추가 실시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1~3월)
 - '25년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과정(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 실시(4월~)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식약처장 인증과정 필기시험(7월)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현장실습(8~11월)
 -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전문인력 배출 및 제도 평가·보완 추진(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고대웅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3
------	-----------------------	-----	---------	------	--------------

3-2-17	분야별·직군별 교육체계 매트릭스 개발	식약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특화인력 양성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 등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할 등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 등 체계 보완
 -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과정 분석·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4월)
 - 연구용역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보완사항 도출(5~6월)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체계 보완(7~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체계 보완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고대웅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3
------	-----------------------	-----	---------	------	--------------

	관련 직군 면허자격 관리시 이수과목에 '마약류 안전관리' 추가	
3-2-18	▶ 마약류 중독자 제한 직군에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식약
	▶ 의료인 보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안전관리' 추가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마약류 중독자의 면허·자격이 제한되거나 마약류 투약후 영향하에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직종* 등에 대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 건설기계관리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직군별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 (현황 파악) 직군별 규모, 소관부처, 이수과목 내용 확인 및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등 조사·검토
 - (사회적 기반 마련) 마약류 교육 이수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직종 종사자·소관부처 및 대국민 등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교육 교재 및 시스템 등 개발 및 활용 활성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내 현황 파악) 직군별 규모, 소관부처, 이수과목 내용 확인 및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성 등 조사(3월~)
- (국외 사례 조사) 직장 내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직원·관리자 교육·직원 지원 프로그램, 마약류 검사 등 정책 사례조사(3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교육체계 구축 → 직군별 소관부처 협업을 통한 교재 등 활용

<보건복지부>

1. 과제 목표

- 의료인* 보수교육 내 마약류 안전관리 등 마약류 교육을 포함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 제고 및 철저한 관리 요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 제2항 및 제3항

제30조(협조의무)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과제 내용) 관련 직군 면허·자격 관리시 이수과목에 '마약류 안전관리' 추가 권고

3. 2025년도 시행계획

- 2026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 시,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권고 (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26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개정·배포, 국가표준관리 지침 및 전문기관 교육 마련 시 활용 권고 등 추가 안내 반영 검토*

* (참고사례) 감염관리의 경우,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2.10월) 「알기 쉬운 감염예방·관리 매뉴얼」 활용하는 방안 권장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미영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1
	의료인력정책과 (보건복지부)		김혜빈 주무관		044-202-2438

3-2-19	대학 협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식약 (교육)
	▶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가이드라인 수립	

1. 과제 목표

-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으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모델을 정립하여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 대학 평생 교육과정 및 학위 연계 등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 예방교육 활동 및 협업 프로그램 모델 등 발굴

3. 2025년도 시행계획

-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 활동을 위한 협력 대학 등 선정
 - 교육 주관 기관 선정 및 협력 대학·학생 서포터즈 위촉(3월)
 - 마약 예방활동단 활동 실시(~12월)
- 교육활동 전개 및 대학 마약예방 교육 가이드라인 수립
 -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지침 마련 및 배포(4월)
 -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결과에 기반하여 교육 지침 수정·보완(12월)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인재양성지원과 (교육부)		김수연 사무관		044-203-6931

3-2-20	교육 현황 분석 · 개선 체계화	식약
	▶ 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교육 현황 분석 등 교육체계 확립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51조의6
- (과제 내용) 교육현황 분석·개선 체계를 위한 교육기관 간 월례회의 운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식약처-마약퇴치운동본부(16개 지부) 예방교육 월례협의체 운영(매월)
 -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현황분석 및 차기 월 예방교육 전략 논의
 - 예방교육 현장 애로사항 논의 및 개선 추진
- 주기적인 교육 통계 분석을 통해 교육 효율성 향상
 - 교육 통계를 바탕으로 교육이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는 취약계층 등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 추진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 간 정례회의 등 지속 운영 및 교육 협업체계 유지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3-2-21	교육 품질 주기적 평가	식약
	▶ 교육 효과성 평가 등 지속 운영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 등 교육체계 확립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2, 제51조의6
- (과제 내용) 교육 품질 주기적 평가 등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전·후 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연중)
 -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지 개발(1월~)
 - 예방교육 실시 전·후 설문조사 실시(2월~12월)
 - 프로그램별 심층인터뷰 등 질적 효과 평가 실시(수시)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 효과성 평가 등 지속 운영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3-2-22	마약류 교육 관계부처·전문가 연석회의 정례화	식약 [교육, 법무, 여가]
	▶ 소관부처·현장 전문가(교사, 장학사 등)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분과 협의체 개최	

1. 과제 목표

- 효과적인 대국민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부처·지자체 등과
원활한 소통·협조 관계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 (과제 내용) 부처·전문가 연석회의 정례화(연 3회 이상)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소관부처, 현장 전문가 등 협의체 운영
 - 주기적으로 마약류 예방분과 협의체 회의 개최(2월, 7월, 11월)
 - 구성 : 식약처(주재),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각 시·도, 각 교육청
 - 내용 : 기관별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계획, 예방교육 실적·성과 공유
및 애로사항·협조 필요사항 등 논의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분과 협의체 지속 운영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여성가족부)		최요한 사무관		02-2100-6319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박천성 서기관		02-2110-3884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		김태환 사무관		044-203-6547

3-2-24	민간 전문기관 교육 참여 확대	식약
	▶ 식품·의약품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및 교육 참여 확대 추진	

1. 과제 목표

- 식의약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확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식의약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예방 교육 참여 확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식품·의약품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기관 협력사업 발굴(1~2월)
 - 민간 전문기관 현황, 수요자 특성 분석 및 기관 협의
 - 기관간 협력사업 내용에 따라 위탁용역 계약 등 추진
 - * 협업사업 예 : ▲교육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제공 ▲교육 품질 평가 ▲위탁교육 실시 등
- 마약류 예방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강화 실시(3월~)
 -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실시
 - 예방교육 실시 현황 분석 및 효과평가 실시(협업사업 종료시)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사업 결과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3-3-1	수사·단속·치료·재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 보호관찰, 치료보호 종료자 등 동의자 대상 ^{함께} 한걸음센터 연계, 수사·단속·치료·재활 기관 간 정보 연계 지속	식약
	▶ 정보공유가능 범위 검토 및 정보 연계·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마약류 중독자 대상 사법처분 및 치료 종료 후에도 치료·사회재활을 지속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지속 운영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2
- (과제 내용) 수사·단속-치료·재활 기관 간 정보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재활서비스 참여 확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식약처) 범부처 마약류 예방·치료·사회재활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한 사회재활서비스 확대
 - 중독자 정보 공유방안, 기관 간 연계·협력 모색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 회의 추진(4·10월)
- (법무부) 보호관찰 등 대상자와 수형자 대상 사회재활서비스 안내 및 자발적 회복의지를 가진 투약사범·중독자를 선별하여 마퇴본부·^{함께}한걸음센터로 연계

(복지부) 치료보호 종료자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및 치료보호기관 대상
사회재활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및 강화

(검찰청) 투약사범·중독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넘어 치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단계의 사회재활서비스 연계 확대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수사·단속 - 치료·재활 기관 간 마약류사범·중독자 사회재활서비스
참여확대를 위한 정보 연계·협력 지속 운영

<보건복지부>

1. 과제 목표

데이터 기반의 마약류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통계 시스템 고도화

2. 과제 내용

(추진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2

(과제 내용) 수사·단속 - 치료·재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추진

○ 정보 보유기관 간 정보 연계·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정보 공유 가능 범위 검토, 플랫폼 구성 등 수행

3. 2025년도 시행계획

정보 공유 연계·통합 협의체 참여 및 논의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고대웅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3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이홍남 사무관		044-202-3871

3-3-2	인공지능(AI)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식약
	▶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정교한 오남용 정보 탐지를 위한 보고 서식 및 시스템 개선	

1. 과제 목표

-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사용·유통을 사전 예측하고 차단하는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 2
- (과제 내용)
 - (마약류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 마약류 오남용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AI 기반 오남용 예측 모델 고도화
 - (부처 정보 연계)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정보를 다방면으로 확인·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정보 연계 확대
 - (취급보고 서식) 정교한 오남용 정보 탐지를 위한 취급보고 관련 시스템 개선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오남용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12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관계기관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환자·의사·관계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 주민등록·사망말소정보(행안부), 출입국내역(법무부), 의사대진(휴진·출국)신고(심평원)

□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예방 시스템**

- 구축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마약류 취급 정보 및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 하여 예측·예방시스템 마련 추진(12월)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정보 및 예측을 위한 공공 정보 연계 확대**

- 마약류 오남용 여부 판단 제고, 예측·예방관리 등에 유용한 공공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처방·급여 정보(보건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 재소자 현황(법무부), 투약 사범 정보(법무부대검찰청 연계)

- 정보 연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월)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추진

□ **정교한 오남용 정보 탐지를 위한 보고 서식 및 시스템 개선(12월)**

- 외국인 처방 환자에 대한 상세 정보 수집, 의료용 마약류 제품정보 항목 개선 등 취급보고 관련 시스템 개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개정된 항목 적용 및 개정사항에 대한 알림 및 교육 실시(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오남용 사전예방을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은혜 연구관	전화번호	043-719-2898
-------------	---------------------	------------	---------	-------------	--------------

3-3-3	통계 현황 · 실효성 분석, 통계조사 개선	식약
	▶ 식약처 보유 통계자료 지속 공유 및 타부처 보유 통계 자료 현황 조사	

1. 과제 목표

- 부처별 소관 마약류 통계 현황 제공을 통한 정책 기반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 (과제 내용) 부처별 보유 통계 현황 제공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하여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 현황 조사 및 공유(6월)
-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수준 등에 대한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실시(4월)
 - *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신념, 지식, 경험 등에 대한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내용 반영 등 추진
- 마약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현황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매월) 및 국가승인통계자료 제공(7월)
 - *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현황 등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아시아·태평양 범죄통계 협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계정책과 협업방안 모색 및 부처별 보유 통계 현황 공유방안 모색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4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은혜연구관		043-719-2898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대웅사무관		043-719-2583

3-3-4	[가칭] 마약류정책연구소 설치·운영	식약
3-4-2	마약류안전관리원 신설·운영	
▶ 마약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Think-Tank 설립 기반 마련 추진		

1. 과제 목표

-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신종마약류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 설립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련 예정
- (과제 내용) 정부 산하기관 설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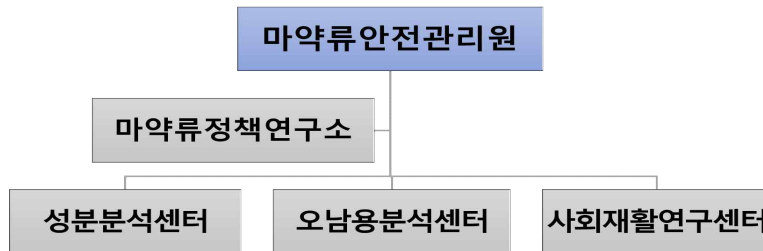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내·외 현황 파악, (가칭)마약류안전관리원 설립 타당성 연구 및 법률 개정안 등 기관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3월~)

○ 필요시 다년도 출연연구 과제 형태로 수행 추진

* 연구사업 주요내용 : 마약류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 그간의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 지원기관 신설 제반사항 및 신종 마약류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 마련

< 향후 조직(안) : 1개 연구소, 3개 센터 >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가칭)마약류안전관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26~)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겨레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2
------	---------------------	-----	---------	------	--------------

3-3-5	현장 수요 정책연구과제 개발	식약
3-3-6	연구자 간 정보 공유·협업 온라인 플랫폼 개설	
3-3-7	마약류 관련 전문학회 운영 지원	
▶ 기관·지역·목적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촉진하고 협업 플랫폼 개설 추진		

1. 과제 목표

- 마약류 문제의 복잡성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분석 기반 마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기관별(학교 등), 지역별(도시, 해안 등), 목적별을 고려한 현장 중심형 연구 수요 파악·수행 체계 구축 ▲학술기관, 지역 사회 조직 등과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 ▲연구자 정보공유, 데이터 활용, 과제개발 등 협력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플랫폼) 개발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현장 중심형 연구 수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4월~)
 - 마약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 * 필요시 현장 수요형 연구과제 발굴·추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3월)
 - 현장 중심 수요발굴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지속
- 전문학회 설립 시 관련 행정적 지원 추진, 전문학회 운영 지원
 - *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다만 비영리임의단체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미영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1
			송현숙 사무관		043-719-2804

3-3-8	마약류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주기적 재검토·정비	식약
3-3-9	현장 적용 곤란 법령 주기적 조사·정비	
▶ 분산된 법령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표준화된 양식·절차로 제·개정 추진		

1. 과제 목표

- 마약류범죄의 형사처벌,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규정의 체계화, 마약류관리법을 중심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대응 역량 확립
- 실무적으로 적용이 곤란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마약류 법령의 조사·정비 체계 마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법령 간 형량 등 차이 비교·분석을 통한 마약류관리법 정비 ▲표준화된 법령 개정 양식·절차를 통해 의견 청취 후 개정 절차 진행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관리법 관련 벌칙기준 등 정비
 - 국내 마약류 종류별 처벌 규정의 정합성 및 수사방식 규정 방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2월~) 및 전문가 의견조회(4월)
 - * 필요시 법령 개정 추진
- 마약류관리법의 표준화된 개정 절차 마련(6월)
 - *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 사항 발굴 추진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미영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1
------	---------------------	-----	---------	------	--------------

3-3-10	수사·단속 최신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지원	식약
3-3-11	현장 수요 장비·기술 선제적 공개	
▶ R&D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 기반 신속 검사키트 개발		

1. 과제 목표

- 마약류에 특이 결합이 가능한 기능성 단백질 개발을 통해 새로운 마약 검사 플랫폼 구축

2. 과제 내용

- (과제 내용) 합성생물학 기반 마약류 대사체에 대한 특이 기능성 단백질 생산 기술 개발 및 라이브러리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뇨시료 내 암페타민 대사체 분석용 반도체 키트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검출빈도가 높은 마약류 중 하나인 암페타민 계열에 대한 합성생물학 기반 단백질을 개발하고, 이를 검사키트에 적용함으로써 고효율, 저비용의 신속검사키트 개발
 - * 신속검사기법 연구 착수보고회(1월)·신속검사 기술 검증(9월)·전문가 자문(11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고효율, 저비용 마약 신속 검사키트 개발(~'28), 검출빈도가 높은 마약류 계열별로 합성생물학 기반 검사키트* 개발 및 제품화 추진
 - * 마약류 대사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단백질을 활용한 반도체 키트, 정확도가 높고 검사비용이 낮음
 - * 추진계획 : '25(암페타민류), '26(오피오이드류), '27(합성대마류), '28(검증)

담당부서	약리마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박수정 연구관	전화번호	043-719-5208
------	-----------------------	-----	---------	------	--------------

3-4-1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	국조 식약
	▶ 마약류대책협의회 구성·기능 개선방안 검토	

1. 과제 목표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효과적 운영방안 강구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 (과제 내용) 마약류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개선 필요성 검토
 - 부처간 협업 및 중앙-지방 연계 강화를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대책협의회 세부 운영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관련 부처 협의·소통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개선 방안 검토 추진(2월~)

* 필요시 정책연구 병행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대책협의회 법령 등 개정안 마련 및 추진

담당부서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 (국무조정실)	담당자	김기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2889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겨레 사무관		043-719-2802

3-4-3	지자체 조례 제·개정	국조 식약
3-4-4	지자체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신설 및 마약류안전담당관 지정	
3-4-6	마약류 정책 참여 시민단체 운영 지원	
▶ 마약류 근절위한 표준 조례 제정 및 지자체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마약류안전관리담당관 지정 유도		

1. 과제 목표

- 정책집행을 위한 서비스 전달 기능 등 마약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과제 내용) 마약류 근절을 위한 지자체 체계 구축 및 시민단체 지원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근절을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 제·개정(안) 마련
 - 마약류 예방·홍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 개정(안) 마련·송부(11월)
 - 또한, 지자체에서도 ^{가칭}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및 ^{가칭}마약류안전관리담당관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 마약류 정책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 운영 지원
 - 마약류 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경우 운영 지원 방안 마련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근절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행안부 협조) 및 시민단체 운영 지원

담당부서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 (국무조정실)	담당자	김기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2889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숙 사무관		043-719-2804

3-4-5	민간 전문기관 시범사업 개발·운영 지원	복지
	▶ 한국형 치료·재활·예방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1. 과제 목표

- 마약류 정책 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 (과제 내용) 한국형 치료·재활·예방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민간 전문 기관 시범사업 개발·운영 지원 및 우수 시범사업 확산·보급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 치료 및 재활서비스 연계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 시범사업(안) : (병원) 입원을 통한 집중 해독치료(3개월 이내) → (의원) 외래를 통한 단약 유지 및 재활치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단약유지, 회복 지원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시범사업 추진 및 효과검토, 우수 시범사업 확산·보급 등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홍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871
------	--------------------	-----	---------	------	--------------

3-4-7	마약류 대응 양자·다자조약 체결	
	▶ 주요 협력국가·국제기구와 마약범죄 대응 관련 업무협약(MOU) 기반 공식적 협력 채널 구축	경찰
	▶ 다양한 국제기관과의 조약 체결 추진	식약

<경찰청>

1. 과제 목표

- 주요 협력 국가·국제기구와 마약범죄 대응 관련 업무협약(MOU) 등 체결하여 명시적·공식적 협력 채널 구축

2. 2025년도 시행계획

- 경찰청-아시아폴(ASEANAPOL) 업무협약 추진, 초국경 마약범죄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협력사항 구체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태국 마약통제청(ONCB),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주요국 마약 단속기관과 마약범죄 공조에 특화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마약류 공동 대응을 위한 양자·다자 조약 체결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 (과제 내용) 마약류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관 및 국내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기관과의 조약 체결 추진
 - UNODC 등 국제기관과의 추가 협력 분야 모색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경감 박다운	전화번호	02-3150-2038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숙 사무관		043-719-2804

3-4-8	중점 국가, 국제기구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경찰
	▶ 美DEA와 '25년도 mini-IDEC 공동개최, 경찰청-인터폴 공동주관 교육 추진	
3-4-9	중점 협력국가·국제기구에 연락사무소 개설, 인적 교류 등 직접 공조 활성화	
	▶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중점 협력국가 공조 확대	

1. 과제 목표

- 중점 협력국가·국제기구와 인적·정보 교류 활성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경찰청-UNODC 간 **협력의향서 체결**(’24년 10월) 등
*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전문가 파견, 신규 프로젝트 개발 등 규정
- (과제 내용) UNODC,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마약단속국, 중국 공안부, 태국 마약통제청 등 주요 협력국 교류 활성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범죄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교류 활성화
 - 마약수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터폴 마약 데이터베이스(RELIEF) 실습 등 경찰청-인터폴 사무총국 공동 주관 교육 실시(5월)
 - UNODC에서 진행 중인 동남아 원료물질 프로젝트와 연계, 동남아 국가의 마약 통제 역량 강화 및 체계 개선 지원
-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점 협력국가 경찰과 교류 확대 및 연락채널 개설 추진, 마약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 활성화
- '25년도 '극동지역 국제마약단속회의(mini-IDEC)' 한국 유치,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동 개최(4월, 부산)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경감 박다운	전화번호	02-3150-2038
------	--------------------	-----	--------	------	--------------

3-4-10	마약류 대응 맞춤형 ODA 지속 추진	
	▶ 관련 ODA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마약류 범죄 근절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경찰
	▶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	대검

<경찰청>

1. 과제 목표

- 맞춤형 ODA 추진을 통한 마약류 근절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과제 내용) 마약류 관련 맞춤형 ODA 사업 추진 및 발굴 확대

3. 2025년도 시행계획

- 몽골 디지털포렌식랩 및 마약수사 시스템 구축 사업(8~10월)
 - 몽골 마약수사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자재 지원(8월)
 - 몽골 마약수사부서 실무급 초청연수 실시, △마약 수사기법 강의
△액션플랜 강의·토의·발표 등 마약범죄 대응 역량강화 교육(10월)
- 키르기스스탄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10월)
 - 키르기스스탄 마약밀매방지국 실무급 초청연수 실시, △마약 수사
기법 강의 △액션플랜 강의·토의·발표 등 마약범죄 대응 역량강화 교육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범죄 대응 관련 성과(국제공조·도피사범 송환 등)와 직접 연계 가능한 ODA 사업 아이템 지속 발굴 및 추진

<대검찰청>

1. 과제 목표

- 국제화된 마약류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마약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 대검 마약과는 '10년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마약류퇴치 위한 ODA 지원사업 실시, 지속 실시하여 역량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25년도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예산 편성('25년) 3.81억 원]
- (과제 내용)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마약류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역량강화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키르기스스탄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25. 3.)
 - 키르기스스탄 마약청에 마약수사 장비(드론, 차량 등) 지원, 키르기스스탄 수사관들의 대한민국 초청 연수, 현지 워크숍 개최 및 일반인 대상 캠페인 전개 등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실질적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경찰청)	담당자	경감 권재용	전화번호	02-3150-0230
	마약과 (대검찰청)		이병록 사무관		02-3480-2292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4-1-1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청년 오남용 우려 의료용 마약류 추가	식약
	▶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 및 마약류 사용정보와 공공 정보를 연계해 환자보호 필요도 분석 정교화	

1. 과제 목표

- 사회적 우려 성분에 대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 추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 (과제 내용)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남용 사전 예방

3. 2025년도 시행계획

- 성분별 처방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마련 및 배포
 - 중독성 및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성분부터 처방 SW 연계 개발 가이드 마련(3월)
 - 해당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 대상 시스템 개발·적용 지원(3월)
- * 펜타닐: 2,885개소 → 메틸페니데이트: 6,809개소 → 식욕억제제: 26,724개소(누적)
- 빅데이터를 통해 오남용 우려 환자 평가 및 정보 제공 고도화(10월)
 - 오남용 여부 확인에 유용한 공공정보 연계·분석을 통해 환자의 오남용 정도를 평가 및 처방 시 투약내역과 함께 팝업으로 제공

< 입법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정
 - *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 추가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오남용 우려가 있는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투약내역 확인 의무 단계적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	---------------------	-----	---------	------	--------------

4-1-2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기준 마련	식약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	

1. 과제 목표

-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시 최초 처방 기간, 연령(미성년자, 고령층 등) 등 기본 원칙을 안전사용 기준에 추가

2. 과제 내용

- (과제 내용)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 최초 처방 또는 장기간 처방 시 주의사항, 연령별(미성년자, 고령층) 고려사항 등을 추가

3. 2025년도 시행계획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제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9월)
 - 청소년 마약 문제 원인 분석 등을 거쳐 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 하여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기본 원칙 항목을 신설

< 청소년 마약 문제의 원인 분석 >	
△ 개인:	급격한 성장, 역할의 전환기에 따른 정체성 혼란, 학업 스트레스 등
△ 환경:	부모의 양육 환경, 이성.친구 갈등, 진로에 따른 스트레스
△ 사회:	병원을 통한 마약류 접근 용이, 사회적 낙인, 사전 예방 체계 부족 등

- 최초 투약 시 처방기간, 장기간 처방 시 유의사항, 연령별(미성년자, 고령층) 주의사항, 환자 본인 신분 확인 의무화 운영방식 등 연구
- 안전사용 기준 개정(안) 전문가 협의체(11월)

구분	주요 내용
최초 처방	▶저용량·단기처방 권고
장기간 처방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
미성년자	▶처방 제한기준 제시(저용량 단기 사용 등, 마약문제 원인 대처)
고령층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
신분 확인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처방 시 신분 확인하도록 권고

-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제개정 추진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개정안 마련(12월)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12월)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	---------------------	-----	---------	------	--------------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4-1-3	▶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식약
	▶ 온라인상 마약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광고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 등 신속 조치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신속 차단 체계 구축)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및 방심위 심의시스템 정보 연계를 통한 신속 차단 체계 구축

※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AI 캡스) 구축 추진 로드맵

'24년	'2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 유관기관 등 신속 차단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기능 구축 * 차단 관련 심의 결과 검토, 중복신고 건 재요청 등 이력 및 통계 관리 ▲ 사후조치 관련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 모니터링 범위 확대

- 신속 차단 및 차단율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한 식약처-방심위 상호 업무 협력체계 운영 ※ 식약처-방심위 MOU 체결('24.11.26)
- * 신속 차단, 시스템 연계, 홍보, 그 외 필요한 사업 추진 상호 협력 등

※ 방통위 측 추진 사항(⇒ 식약처 협조)

┃ 마약류 불법 판매 서면(전자)심사 도입 ⇒ **신속 차단 가능**

* 「방통위법」 개정 진행 중 / 대면회의 시 평균 35일 → 서면회의 시 1~2일로 단축

┃ 기술적 문제로 미차단된 불법 게시물 차단 근거 마련 ⇒ **실질적 차단 가능 기대**

* 불법 게시물 URL를 차단(접속경로 차단, 콘텐츠는 존재)해도 위반 사이트로 연결되는 우회 경로(임시 저장서버)가 남아있어 우회경로에 대한 차단 근거 마련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 예고('24.4.29.)

○ 불법 판매 광고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마약류관리법」 개정 추진

* 김선민 의원 대표 발의('24.11.5)

□ **(모니터링 강화) 유관 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불법 모니터링 역량 및 인프라 강화**

○ 마약류 감시 **모니터링 요원 역량 강화 교육 발굴 및 지속 실시(반기별)**

* 경찰청 협조로 모니터링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온라인 직무교육, 수사 전문가 초빙 교육 등 실시

○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 검색어 주기적 관리(월별)**

*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모니터링 검색어 운영 지침 제정 및 지속 개정

** 마약안전기획관-사조팀 간 정례회의로 검색어 발굴

○ 온라인 마약 불법 **모니터링 결과 심층·통계 분석을 통한 수사연계 가능성 제고 및 인적 인프라 확보·운영**

* 다빈도 적발 사례, 광고 이용 매체 경향, 판매 방식 등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수사 연계 방안 도출 등

□ **(월례협의회) 식약처 부서간 온라인 불법 마약 차단 협력 시스템 운영**

○ **(구성)** 마약안전기획관(마약관리과, 오남용감시단, 마약정책과), 사이버조사팀, 위해 사범중앙조사단

○ **(운영)** 월 1회 주기적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 **(주요 안건)** 온라인 불법 마약 거래 차단 추진사항 공유·협업

- **(대상 선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자 중 수사 단속 대상 선정 등

- **(키워드)** 임시마약류 지정, 언론보도 등을 공유하여 새롭게 쓰이는 신조어, 은어 등 마약류 명칭 공유 및 주기적으로 검색어 갱신(온라인 모니터링 관련 운영 세칙에 반영)

- **(협력)** 식약처-외부기관(경찰청, 검찰 등) 간 소통을 위한 연락망(Focal Point) 지정(오남용감시단) 및 대외 협력소통

< 주요 일정 >

구분			추진내용
'25	1/4	1월 (연중)	· 식약처-방심위 시스템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운영
		1월 (연중)	· 온라인 검색어 관리 등 월례협의회 운영
		2월	· 마약류 감시 모니터링 요원 역량강화(교육)
	4/4	11월	· 마약류 감시 모니터링 요원 역량강화(교육)

< 여성가족부 >

1. 과제 목표

- 온라인 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온라인을 매개로 한 마약 판매, 홍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노출 신속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35조
- (과제 내용)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조치 요청

3. 2025년도 시행계획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운영하여 마약류 등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 및 조치(연중)

* 온라인 마약 홍보 콘텐츠 모니터링 실적 : 21,223건('24.12월 기준)

-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으로 게시물 삭제 등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연중)

*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구글 등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사이버조사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주영 사무관		043-719-1920
	청소년보호환경과 (여성가족부)		신민관 사무관		02-2100-6301
			전국혜 주무관		02-2100-6293

	기관 간 청소년 관련 온라인 불법 유통정보 공유 연계	
4-1-4	▶ 온라인 불법유통정보의 기관 간 정보 공유 연계 강화	식약
	▶ 온라인상 마약판매 등 불법정보 관계기관 공유	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연계 지속 강화 등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제 내용)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정보의 기관간 공유·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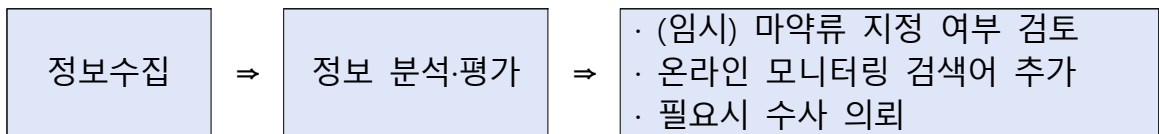
3. 2025년도 시행계획

- (수사·처벌) 검찰·경찰과 협력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판매 수사 의뢰, 적발·단속 확대
 -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및 마약범죄특별 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협력·단속 지속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자가 특정되는 게시글에 대해 사전협의(식약처-경찰청)하여 수사 확대 추진
 - 온라인 마약류 불법 모니터링 자료 대검찰청 제공 및 자료 분석 등 상호 협업 강화(분기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 * 식약처에서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자료 및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연계 가능한 사례 선별 후 조치
 - ** 대검찰청 인터넷 마약류범죄(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 (국제공조) 신종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불법 유통범죄에 범국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활용한 글로벌 대응체계 운영

■ GRIDS(Global Rapid Interdiction of Dangerous Substances): 위험 물질 관련 사건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ION(새로운 정신 활성 물질(NPS)의 실시간 정보 소통 프로그램)과 Project OPIOIDS 및 민관 협업체로 구성

- (활용) 수집된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후속 조치 진행



- (법적 기반 강화) ▲온라인 유통 물품(식품, 전자담배 등)에 대한 수거·검사 근거 ▲위장수사 근거 마련(마약류관리법) ▲의료용 마약류 판매 수사 근거(특사경법) 마련으로 온라인 단속 강화

- (월례협의회) 식약처 부서간 온라인 불법 마약 차단 협력 시스템 운영

- (구성) 마약안전기획관(마약관리과, 오남용감시단, 마약정책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운영) 월 1회 주기적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 (주요 안건) 온라인 불법 마약 거래 차단 추진사항 공유·협업
 - (대상 선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자 중 수사 단속 대상 선정 등
 - (키워드) 임시마약류 지정, 언론보도 등을 공유하여 새롭게 쓰이는 신조어, 은어 등 마약류 명칭 공유 및 주기적으로 검색어 갱신(온라인 모니터링 관련 운영 세칙에 반영)
 - (협력) 식약처-외부기관(경찰청, 검찰 등) 간 소통을 위한 연락망(Focal Point) 지정(오남용감시단) 및 대외 협력소통

< 주요 일정 >

구분		추진내용	
'25	1/4	1월 (연중)	· 온라인 검색어 관리 등 월례협의회 운영
		1월 (연중)	· 국제 정보교류·수집
	2/4	2월	· 모니터링 자료 제공 등 상호 협업(대검찰청)
		5월	· 불법 판매자 특정 시, 수사연계 협의(경찰청)
		6월	· 모니터링 자료 제공 등 상호 협업(대검찰청)
		9월	· 모니터링 자료 제공 등 상호 협업(대검찰청)
	4/4	12월	· 모니터링 자료 제공 등 상호 협업(대검찰청)

< 입법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온라인 유통 물품(식품, 전자담배 등)에 대한 수거·검사 근거
 - 위장수사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1. 과제 목표

- 온라인 상 마약거래정보 등 불법정보 발견 시 대검찰청과 공유하여
수사로 연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조
- (과제 내용)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중 마약불법거래
정황 등 발견 시 채증하여 대검찰청과 공유

3. 2025년도 시행계획

- 불법 마약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여가부-대검찰청
핫라인 구축('25. 3월)
- 불법 마약류 정보 등에 대한 점검 및 대검찰청에 상시 공유·연계(연중)

담당부서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현수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92
	사이버조사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주영 사무관		043-719-1920
담당부서	청소년보호환경과 (여성가족부)	담당자	신민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01
			전국혜 주무관		02-2100-6293

4-1-5	미성년 투약사범 치료보호 강화	대검 복지
	▶ 청소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에 확대로 미래세대 마약 수요 억제	

1. 과제 목표

- 미성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중독 초기에 치료실시와 동시에 갱생의 기회 부여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규정」(대통령령),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에 처리지침」(예규)
- (과제 내용) 미성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조건 기소유에 처분을 강화, 재발 방지 및 사회 복귀에 기여

3. 2025년도 시행계획

- 재범 위험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미성년의 경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필요
 - 단순 마약류 투약사범, 특히 미성년 투약사범에 대하여는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수요 억제 강화
- 치료조건부 기소유에 대상 미성년자 치료보호 강화 (복지부)
 - 치료보호 종료이후 미성년 투약사범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사실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통보
 - * 일반·단기개입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 지원 사업 등 재활프로그램 제공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적극적인 치료보호 의뢰 등 지속적인 협조 추진

담당부서	마약과 (대검찰청)	담당자	이병록 사무관	전화번호	02-3480-2292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이홍남 사무관		044-202-3871

4-1-6	마약류 보호관찰 청소년 치료적 개입 강화	범무
	▶ 지역 전문가·병원과 연계한 상담·치료, 불시 약물 검사 등을 통한 예방적 지도감독 실시	

1. 과제 목표

- 마약류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통한 건전한 성장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감독)
- (과제 내용) 마약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불시 약물검사, 지자체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치료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중독 소년의 치료·재활 촉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 실시
 - 모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개시신고 시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사용실태 설문’ 및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 마약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치료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단약동기 강화 및 재활 지원
 - ※ 소년 대상자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등을 통해 마약 중독대상자를 선별하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전문가 연계 상담 및 치료 지원
 - (약물검사 강화) 수사·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재범 사전 차단

담당부서	범무부 (소년범죄예방팀)	담당자	이경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336
------	------------------	-----	---------	------	--------------

4-1-7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식약
	▶ 약물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1. 과제 목표

-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자의 중독 약물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재활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의 약물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재활 서비스 운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종사자 교육 및 시범 운영 후 전국 **함께한걸음** 센터에서 실시
 - 청소년 프로그램 종사자 교육(3, 6월)
 -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7월~, 수요에 따라 지속 실시)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특성을 고려한 재활서비스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	-----------------------	------------	---------	-------------	--------------

4-1-8	청소년 관련 시설 대상 찾아가는 예방·중독상담 진행	식약
	▶ 전국 청소년 복지시설 및 소년원 등으로 찾아가는 예방·중독 상담	

1. 과제 목표

- 전국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및 찾아가는 중독 상담 실시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전국 청소년 관련 시설 연계 확대를 통한 마약류 찾아가는 예방·재활 상담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퇴치운동본부(함께한결음센터) - 전국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연계(~6월)
- 전국 청소년 관련 시설 연계 확대를 통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 실시(7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 시설로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 지속 상담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	-----------------------	-----	---------	------	--------------

	치료·재활 종료 청소년 개별 사례관리 및 관계기관 연계	
4-1-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한걸음센터로 청소년 연계 및 사례관리(시범, '25년 충청권)	식약
	▶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지속 사례관리 하고, 관계기관과도 연계	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시범사업 실시('25년, 대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과제 내용) '25년 시범사업 우선 실시 후 확대 검토

3. 2025년도 시행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전지부)과 연계(3월) 및 치료 재활 마친 청소년 사례관리(연중)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여부 검토

<여성가족부>

1. 과제 목표

- 마약류 투약·중독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심리 지원 등 지속 사례관리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과제 내용)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보호, 재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3. 2025년도 시행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재활 종료 청소년 심리지원
 -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해 상담·심리 지원
 - 재발 위험 등 위기도 악화 시 ^{함께}한결음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연계 등 지원
- *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마약퇴치본부 MOU 체결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이후 사업 추진 지역 단계별 확대 검토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이철승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2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정이석 주무관		02-2100-6277

4-1-10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식약
	▶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및 확대	

1. 과제 목표

- 청소년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청소년 대상 체험형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교육 몰입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대상 체험형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2월)
 -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계획 수립*(3월)
 - * 대상, 일정, 방법 등
 - 청소년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3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예방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4-1-11	‘마약청정 대한민국’ 서비스 고도화	식약
	▶ 스마트폰 메타버스 어플 사용성·성능 개선을 통한 마약류 교육 질 향상	

1. 과제 목표

- 스마트폰을 통해 VR·메타버스 등 체험형 예방교육 콘텐츠 사용성 강화로 교육서비스 질 향상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VR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스마트폰 어플 출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유아, 청소년용 VR 콘텐츠 4종 추가 개발(1월~)
- 사용자 친화적으로 ‘마약청정 메타버스’ 플랫폼 리뉴얼(2월)
 -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예방교육 시범운영 및 평가
- 신규 개발 VR 콘텐츠 및 메타버스 어플 출시 및 리뉴얼 오픈(3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VR·메타버스 등 체험형 교육 효과성 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육 활용 지속 추진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4-1-12	학교 밖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여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초소양교육 운영 시,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1. 과제 목표

- 마약류 등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 및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 불법 마약류 대처방안 습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 및 가치관 정립에 기여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과제 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기초소양교육 운영 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 필수교육 항목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지정·포함하여 교육 강화(~12월)
 - 식약처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의 유해성, 투약 권유 대처요령 등을 알리는 예방교육 지원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마약류 예방 필수교육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담당자	최요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19
			박윤호 사무관		02-2100-6315

4-1-13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수립·보급	
	▶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20개 대학으로 확대, 대학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수립	식약 교육

1. 과제 목표

- 대학교 내 마약류 교육활동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대학생의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모델을 정립하여 예방교육 활동에 대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전국 대학 어디든 자체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보급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 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국내 20개 대학과 협력하여 예방교육 활동 및 협업 프로그램 모델(가이드라인) 등 정립하여 전국 보급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 활동을 위한 협력 대학 등 선정
 - 교육 주관 기관 선정 및 협력 대학·학생 서포터즈 위촉(3월)
 - 마약 예방활동단 활동 실시(~12월)
- 교육활동 전개 및 대학 마약예방 교육 가이드라인 수립
 -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지침 마련 및 배포(4월)
 -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결과에 기반하여 교육 지침 수정·보완(12월)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인재양성지원과 (교육부)		김수연 사무관		044-203-6931

4-1-14	대학별 신입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권고 지침 마련	식약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매뉴얼 개정(~'25.1월)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대학교 신입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으로 올바른 마약류 인식 및 경각심 제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지침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 표준 교육교재 개발(2월)
- 교육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교육교재 배포 및 활용안내(2월)
- 대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문강사 지원 및 교육 실시(3월~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지원 지속

<교육부>

1. 과제 목표

- 신입생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실시 권고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과제 내용)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연수 행사 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음주, 성폭력 예방 등 안전교육 실시 권고

3. 2025년도 시행계획

- 관련 매뉴얼* 개정을 통해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연수 행사 시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안내(25.1월)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교육안전정책과 (교육부)		오은경 사무관		044-203-6658

4-1-15	대학별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 대학별 마약류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식약
	▶ 대학별 마약류 예방교육·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대학별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마약류 인식 제고 및 확산 유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대학별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우수사례 발굴

3. 2025년도 시행계획

- 대학별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우수사례 발굴 사업 추진에 협조(사업기간 내)

<교육부>

1. 과제 목표

- 마약예방교육 활동 협력대학 등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프로그램·홍보 캠페인 중 우수사례 발굴·확산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
- (과제 내용) 마약 예방활동단 활동 등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 발굴·확산

3. 2025년도 시행계획

- 20개 대학 '마약 예방활동단'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대학별 마약류 예방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전 대학에 발굴·확산하여 다른 대학에서도 마약류 예방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인재양성지원과 (교육부)		김수연 사무관		044-203-6931

4-1-16	대학 서포터즈를 통한 마약류 예방활동 실시	식약
	▶ 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대학 내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실시	

1. 과제 목표

-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캠페인 활동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대학생의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과제 내용) 국내 대학과 협력 및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대학생·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활동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대학생 마약예방 서포터즈 구성 및 교육
 - 교육 주관 기관 선정 및 협력 대학·학생 서포터즈 위촉(3월)
-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서포터즈)을 통해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및 활동 캠페인(예방 부스·전문가 특강·SNS 캠페인 등) 전개(~12월)
- 서포터즈별 활동 사항 보고 및 점검(8월, 12월)
-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및 활동 효과성 평가 실시(12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활동 지원 지속

담당부서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589
------	-----------------------	-----	---------	------	--------------

4-2-1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	범무
	▶ 마약류수용자 대상 1:1 상담, 수시순찰 강화 및 적발시 처우상 제재를 통한 범죄학습 차단	

1. 과제 목표

-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범죄 학습 행위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부터 제209조까지
- (과제 내용) 마약류 수용자의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수용거실에 대해 순찰 횟수 및 적발 시 처우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수용자 거실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수시순찰
 - 기동순찰팀원 등에 의한 마약류수용자 거실 수시순찰
- 범죄학습 차단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8월)
 - 수용관리 업무 경험이 많은 교도관을 상담자로 지정하여 마약범죄 학습 또는 추가 범죄 등 방지를 위하여 마약범죄 수범 전과 우려가 큰 수용자 대상 상담 실시
 - ※ 재활상담이 아닌 수용생활 관련 상담을 통해 마약범죄 학습 행위, 범죄 모의 방지로써 마약재활 전담교정시설 등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시행 시기 및 시행내용과 기관 등 조정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범죄학습 차단 행위 적발 시 처우상 제한,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검토 및 범죄학습 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순찰 강화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범무부)	담당자	박천성 서기관	전화번호	02-2110-3884
	보안과 (범무부)		김세정 서기관		02-2110-3381

4-2-2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탐지 장비 도입	법무
4-2-3	수용자 거실 내 수시·불시 마약류 검사 강화	
▶ 첨단장비 도입으로 교정시설 내 마약반입 시도 차단 및 수용자 거실 내 수시·불시 마약류 검사 강화		

1. 과제 목표

- 교정시설 내 마약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여 마약사범의 원활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 교정시설 이온스캐너 등 마약류 탐지 장비 도입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 (과제 내용) 마약탐지장비를 순차적으로 전 교정시설에 도입하여 외부로부터 마약 반입을 원천 차단

3. 2025년도 시행계획

- 첨단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 통한 검사 강화(25. 2)
 - 극소량의 마약 물질 감지 기능을 탑재한 입자 정밀 분석기로서 수용자 입소 시 신체검사복 착용 상태 정밀검사, 차입 물품 검사, 서신 검사, 거실 내 검사 등에 적극 활용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

- 휴대용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 추가 도입(25. 10)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기존 도입한 장비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도입, 전 교정시설에 마약탐지장비 확대 보급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박천성 서기관	전화번호	02-2110-3884
------	------------------	-----	---------	------	--------------

4-2-4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마약류 수용자 동일 수준 관리	법무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 방지	

1. 과제 목표

- 마약류 검사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반입 시도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를 방지하여 성공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
- (과제 내용) 입소 시부터 마약류 수용자의 신체검사 및 거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반입 시도 및 오남용을 차단하고 재활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에 기여

3. 2025년도 시행계획

- 수용기간 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 확인 시 징벌 처분, 형사 입건 및 송치 적극 검토(연중)
- 송치 결과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될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고,
 - 수용자의 보관품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마약류 반입 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6조 내지 제209조에 따라 관리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류수용자 지정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담당부서	보안과 (법무부)	담당자	김세정 서기관	전화번호	02-2110-3381
------	--------------	-----	---------	------	--------------

4-2-5	수용자 처방·투약정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실무협의체 구성	법무
	▶ 교정시설내 과거 처방·투약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식약

<법무부>

1. 과제 목표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내부 교정의료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개정('25. 2. 6.)
- (과제 내용) 교정의료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3. 2025년도 시행계획

- 수용자 처방·투약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 식약처와 마약류 의약품 교차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처방·투약정보 등 민감정보를 식약처 통합정보센터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여 식약처와 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5. 2. 6.)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2 5의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부상자 등 치료)에 따른 수용자의 치료 관련 기록에 관한 자료 송부 신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교정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방법, 수용자 처방·투약정보 제공 범위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과제 목표

-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과거 처방·투약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처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 2
- (과제 내용)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과거 처방·투약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처방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과거 처방·투약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처방
 - 교정시설 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결 개발(연중)
 - 교정시설 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결 착수(연중)
 - 연계 개발 후 활용, 문제점 등 모니터링(연중)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연계 모니터링 확인 및 교정 시설 추가 연계

담당부서	의료과 (법무부)	담당자	박병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617
	마약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은혜 연구관		043-719-2898

4-2-6	수용자 오남용 투약 여부 교차점검	법무
	▶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규제약물 지정 건의	

1. 과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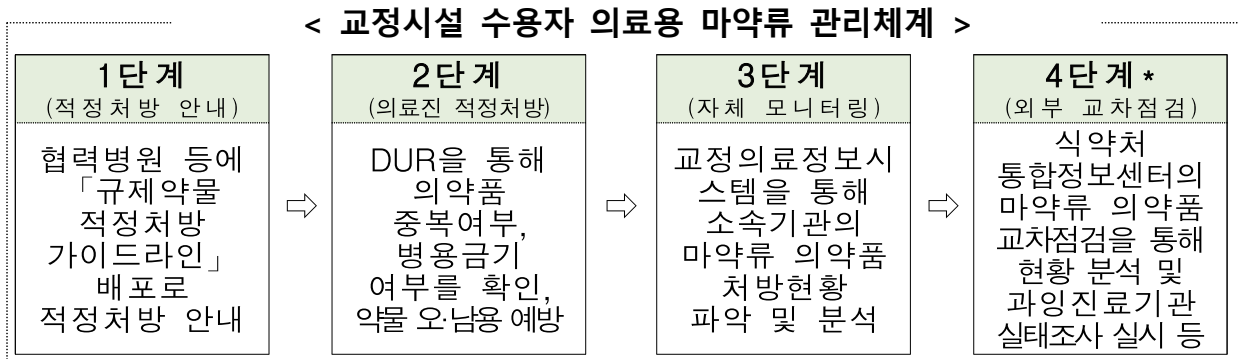
-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와 협업하여 사각지대 없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개정('25. 2. 6.)
- (과제 내용) 수용자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단계별 점검으로 사각지대 없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



-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규제약물 지정 건의
 - 풍선 효과로 트리돌 등 의료용 마약류 대체 의약품 수요가 폭증하여 실효적인 의료용 마약류 예방을 위해 규제약물 지정* 건의
 - * 식약처에 교정시설 내 대체 의약품을 '임시마약류' 또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요청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교차점검을 통해 식약처와 수용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현황 등을 공유하고 과잉 진료기관 현장조사 실시

담당부서	의료과 (법무부)	담당자	박병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617
------	--------------	-----	---------	------	--------------

4-2-7	교정시설 내 자기주도 재활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무
	▶ 교정시설 내 전체 마약류 수용자 대상 자기주도적 중독재활습관 훈련 과정 운영	

1. 과제 목표

- 전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재활훈련프로그램 운영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과제 내용) 이수명령 집행 및 집단재활프로그램 이후 회복을 위한 습관을 체화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

3. 2025년도 시행계획

- 재활전담교정시설에서 시범운영 실시 (3월 ~ 6월)
 - 집단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 대상으로 재활 유지를 위한 재활훈련 시행
 - * 시범운영 기관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광주교도소)
- 시범운영 결과 보고 및 효과성 분석 (7월 ~ 8월)
 - 자기주도적 재활훈련프로그램이 단약 효능감 및 우울·불안 정도 등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자기주도적 재활훈련프로그램 내용
 - 재활프로그램 수료 이후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습관을 체화하는 30회기 구조화된 재활훈련프로그램으로 구성

<자기주도적 재활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회기	주 제	내 용
1회기	준비하기	시작할 결심, ‘회복 및 보호요인점검’, ‘재발 및 위험요인점검’
5회기	중독과 자기이해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내가 가진 마음의 허기, 고립과 소외, 사랑하기 좋은날, 내가 모르는 내가 마약을 하는 이유
6회기	정서조절 스트레스	내마음에, 마음 안아주기, 마음의 일기예보, 취약성의 역설 감정 거리두기, 나를 위한 작은 친절
4회기	재발방지	일상이 흔들릴 때, 피할 수 없는 갈망, 회복의 계단 오르기 피할 수 없는 갈망, 치료제인가? 재발의 시작인가?
6회기	상담종결	꿈에서현실로, 뚜벅뚜벅 걸어갈 길, 내 마음의 보석상자 성장의 꽃 피우기, 내 인생 여행의 필수품, 기적의 날
8회기	회복계획	내가 매일 새롭게, 작은 반복의 힘, 마음의 방 정리, 일 진로장벽, 인생관리, 천천히 음미하며 먹기, 근로자로 살기

※ 총 3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듈화 되어 있어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회기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운영기관 및 운영 대상 단계적 확대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강등원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465
-------------	------------------	------------	---------	-------------	--------------

4-2-8	수용자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확대	범무
	▶ 교정시설 내 전 수형자 대상 중독예방필수교육 실시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과제 목표

-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선제적 중독 예방과 함께 마약류사범의 중독 요인, 재범 위험성, 회복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과제 내용) 교정시설 마약류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 대상 필수 교육과정으로서 물질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정 마약류사범(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전 수형자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으로서 물질중독예방교육 실시(연중)
 - 남은 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인성교육 및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성 및 실시
 - * 마약류사범, 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 (내용) 물질중독의 정의와 과정, 마약류 및 알코올의 폐해, 물질중독 회복 및 치료, 지역사회 물질중독 치료기관 소개 등
 - (형태)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강의, 영상교육 등

□ 외국인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워크북 발간 (11월)

- 교정시설 내 급증하는 이수명령 부과 다국적 외국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 (방법) 외국인 마약류사범 특성, 마약류 담당 직원의 요구사항,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 마약류사범 치료도구 중 필수 내용 발췌 등
- (내용) 마약류 중독의 정의, 마약류 위험 및 보호 요인, 자가 치료적 대처 방법, 출입국 관련 사항 등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추가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강등원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465
------	------------------	-----	---------	------	--------------

4-2-9	교육 이수 명령 대상 확대	범무
	▶ 마약류 판매·제조 등 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1. 과제 목표

-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범에 대해서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판매·제조·유통·소지 범죄자에게도 재범예방 교육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범죄 근절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범에 대해서만 마약류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과제 내용) 마약류 판매·제조·유통·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범죄 근절에 기여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및 개정요청 (6월)
 - 재범방지 교육 이수명령의 적정 상한 시간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요청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비투약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계획 등 검토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박천성 서기관	전화번호	02-2110-3884
------	------------------	-----	---------	------	--------------

4-2-10	치료·재활 대상 미포함 수용자도 개별 상담 프로그램 제공	법무
	▶ 이수명령 비부과자 및 미결수용자 대상으로 구조화된 개별 메타인지과정 운영	

1. 과제 목표

- 집단 재활교육 프로그램 외 개별적 재활상담이 필요한 마약사범 (소년, 여성, 미결수용자 등)에게 제공할 개인별 재활상담 도입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 (과제 내용) 2024년 개발 완료한 5회기로 구성된 구조화 개별메타인지과정 도입

3. 2025년도 시행계획

- 개별메타인지과정 내용
 - 5회기 구조화 1:1 상담프로그램

회기	주 제	내 용
1회기	상담도입	상담구조화 및 내담자 주호소 문제 파악
2회기	심리교육	심리교육 (약물중독 오해, 약물중독의 단계, 변화단계, NIDA 6요인 등)
3회기	사고조절	변화단계와 우선순위에 따른 메타인지(보상), 실행기능(부정적 정서), 내수용감각(수면) 개입
4회기	자기조절	
5회기	상담종결	상담 성과 평가 및 정규서비스 안내

※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회기를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상담프로그램 대상
 - 신입상담 및 검사결과 특이자*
 - * 초기검사(우울, 불안, AUDIT-K, URICA 등) 평균범위를 벗어난 자, 중독 수준이 높거나 병식이 낮은 자 등
 - 재활프로그램 교육 전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한 자
 - 재활프로그램 수료 후 추가적인 상담을 희망하는 자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기관별 담당자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및 시범운영 및 전문가·현장 의견 지속 청취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김도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508
------	------------------	-----	---------	------	--------------

4-2-11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관련 자격 취득 지원	법무
	▶ 국내외 마약류 중독재활 관련 자격과정 도입 및 양성과정 운영	

1. 과제 목표

-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의 수준 높은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및 관리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조
- (과제 내용) 마약사범에 대한 원활한 치료재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 2025년도 시행계획

-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운영 (상반기)
 - 집합교육 : 4박5일
 - 자격시험 : 필기시험*(객관식 100문항), 60점이상 득점시 합격
* 중독의 이해, 중독심리치료 및 상담이론, 중독행동의 특성 이해
 - 자격심사 : 개별상담, 심리검사, 수퍼비전, 학회참석 등 자료제출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지원
 - 필수전문 과정 : 이론교육(온라인) 80차시+수료시험(온라인)
 - 예방교육강사 과정 : 이론교육 110차시+필기시험+현장실습 20시간
 - 사회재활상담사 과정 : 이론교육 140차시+필기시험+현장실습 80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여 운영하나 현장실습은 법무부와 협업
- NAADAC 국제약물중독전문상담사 교육과정 도입 추진
 - 국제기준의 자격검증 및 수련시간에 대해 한국 교정시설 실정을 고려하여 NAADAC과 조율
 - 기존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과정 커리큘럼을 반영하여 적용하거나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편입 가능성 논의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퇴직자 중 관련 자격 보유자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 및 재교육을 통해 마약사범 출소 전후 연계상담 및 재활지원 인력으로 활용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김도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508
------	------------------	-----	---------	------	--------------

4-2-12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
	▶ 프로그램 담당자 및 보안 근무자 교육	

1. 과제 목표

-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및 마약류사범 수용관리 능력 향상 도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9조
- (과제 내용) 중독재활 프로그램 담당자 치료재활 역량 강화 및 보안 근무자 마약류사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워크숍 개최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교정시설-지역사회 연계 재활체계 구축을 위한 교정공무원-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 교육 (2월)
 - * 교정공무원·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중독당사자의 치료공동체 이해 및 실습, 지역사회 연계 재활체계 구축 등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본 교육 (6월, 연 1회)
 - * 마약류 관련 법률, 중독재활 이론 및 실습, 재활 상담·정책, 자조 모임 이해 등 물질중독 치료 재활 실무 5일 합숙 과정(50여 명)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급 교육 (지방교정청별 연 1회)
 - * 중독재활 치료적 동향 이해, 중독재활 상담, 사례 회의 등
- 마약류 중독재활 담당자 심화 교육 (12월, 연 1회)
 - * 내용 : 중독재활 강화, 치료공동체 심층 이해, 지역사회 연계 등 중독재활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방안 논의
- 신규 교정공무원(7, 9급) 마약류사범 수용관리 능력 강화 (연중)
 - * 내용 : 마약류 정의·종류·동향, 마약류사범 특성 이해, 수용관리 시 유의 사항 등 약 500여 명 교육
- 승진자 마약류사범 수용관리 능력 강화 (연중)
 - * 내용 : 마약류 동향, 마약류사범 수용관리 등 약 600여 명 교육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사범의 특성과 치료 동향 반영한 교육과정 업데이트 및 마약류 사범 수용관리 노하우 관련 최신 정보 제공,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담당부서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담당자	강등원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465
------	------------------	-----	---------	------	--------------

4-3-1	입국 전 사증 심사 시 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법무
	▶ 유학생, 관광객 등 신분 위장을 통한 마약 유통 억제	

1. 과제 목표

- 근로자, 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마약을 유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입국 전 사증 심사 단계부터 선제적 차단 필요
- ※ 인조 꽃다발 속 마약이...국내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들 적발 ('24. 6. 24. 연합뉴스)

2. 과제 내용

- 마약 사범 유입 억제를 위한 사증심사 필수 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사증 심사 시 마약 관련 필수 제출 서류*(마약검사 확인서, 건강진단서) 위변조 방지 체계 고도화

*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은 마약검사확인서를, 기술연수생(D-3) 등은 건강검진 서류 제출

- (재외공관) 서류 위변조 등 의심 특이 사항 발견 시 정밀심사
- (법무부)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감식활동 강화, 재외공관 사증지도 시 서류 위변조 사항 심사 수행 여부 점검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서류 위변조 등 의심 사항 발견 시 인천공항청 감식과에 진위 확인을 필수적으로 의뢰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재외공관 관리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김은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7
------	----------------	-----	---------	------	--------------

4-3-2	입국 후 마약류 범죄 연루 외국인 재입국 규제강화	법무
	▶ 마약류 범죄연루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1. 과제 목표

- 입국 후 마약류 범죄 연루 외국인의 재입국 차단을 위한 입국규제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과제 내용)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재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규제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외국인 마약류 사범 입국금지 강화
 - (입국금지 기준 강화) 벌금형 이상 마약사범, 마약류 소지 입국불허자 등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입국금지기간 상향 적용
 - ※ 마약류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기준 개정 완료(2024)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범죄 연루 외국인 입국규제 지속 추진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담당자	이상배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36
------	-----------------	-----	---------	------	--------------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 단속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4-3-3	▶ 합동 단속·법령 개정 추진, 불법체류 마약범죄 대응	경찰
	▶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법무

<경찰청>

1. 과제 목표

- 외국인 정책 주무 부처인 법무부 중심의 협조체계에 인력·장비 등 역량을 적극 지원, 불법체류와 긴밀히 연계된 외국인 마약범죄 대응

* '24년 전체 외국인 피의자 35,283명 중 마약류 사범 비율: **5.9%**(2,065명)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4,965명 중 마약류 사범 비율: **17.3%**(858명)

2. 2025년도 시행계획

- (합동 단속) 법무부 주관 정부 합동 단속에 적극 참여, 단속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 등 발견 시 입건 및 유통망 등 수사

* '24년 단속 시 국제범죄 수사 인력 지원(총 2회, 연 240명), 불법체류 외국인 20,940명 검거 기여

-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시 공조, 단속 전·후의 마약류 범죄 첩보에 대해서도 획득 체계 구축하여 선제적 범죄 대응

- (법령 개정) 마약범죄 중요 신고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서에 신원 등이 통보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추진(법무부 협의 필요)

* 통보면제를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범죄신고자 **통보 면제 근거**를 신설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범죄신고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된 경우 <신설안>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 합동 단속 시행 횟수 확대(연 2회 → 3회 이상 등)

<법무부>

1. 과제 목표

-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국민의 불안 해소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 확립 필요

※ (대검찰청 외국인 마약사범 통계) '18년 948명 → '19년 1,529명 → '20년 1,958명 → '21년 2,330명 → '22년 2,573명 → '23년 2,562명

2. 과제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부처 협조체계 구축

3. 2025년도 시행계획

-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마약사범 정보 공유) 마약사범 관련 정보(내·외국인) 입수 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 (관계기관 공조)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시 마약 수사 권한이 있는 관계기관(경찰, 검찰, 관세청 등)과 공조하여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 수사 권한이 있는 관계기관(경찰, 검찰, 관세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지속 협력

담당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찰청)	담당자	김태현 경감	전화번호	02-3150-2043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택균 사무관		02-2110-4082

4-3-4	유학생 외국인 등록 시 안내자료 배부	법무 식약
	▶ 유학생 등 마약 노출 위험이 높은 외국인 대상 외국인 등록 시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배포	

1. 과제 목표

-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을 이용한 마약 유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한 예방 필요
- ※ "정상적인 일자리인 줄"...사가.마약 범죄 연루되는 외국인들(24. 7. 30. 노컷뉴스)

2. 과제 내용

- 유학생 등 마약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등 목적으로 출입국 관서 방문 시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등 배포

3. 2025년도 시행계획

- 외국인 등록 시 마약 중독 및 마약 관련 범죄 연루 방지 등을 위한 홍보자료 배포
 - (식약처 등 관계기관) 마약류 예방을 위한 관계자료를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공
 - (법무부) 유학생 등 마약류 노출 위험이 높은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 등을 위해 지방 관서 방문 시 홍보자료 배부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마약류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 비치 및 외국인 등록을 위해 방문 외국인에게 안내자료 배부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법무부)	담당자	김은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7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지연 사무관		043-719-2589

4-3-6	다국어 홍보자료 대학별 배포	식약
4-3-9	취업교육 및 등록·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마약류 예방 홍보물 배부	
▶ 유학생, 외국인 및 체류 근로자 등을 위한 마약류 예방 홍보물 지원		

1. 과제 목표

- 외국인 및 체류 근로자 등을 위한 마약류 예방 홍보물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과제 내용)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 홍보 추진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국내 법령·처벌조항 등 마약류에 대한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배포
 - 대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료(외국인)를 활용하여 안내 자료 제작(~6월)
 - *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작(카드뉴스, 리플렛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대학을 통해 배포(법무부·교육부 협업, 7월~)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예방 홍보물 배포를 통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마약예방재활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송현숙사무관	전화번호	043-719-2804
			김지연사무관		043-719-2589

4-3-5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법무
	▶ 유학생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1. 과제 목표

- 유학생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한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
- (과제 내용)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에 강사가 찾아가서 유학생의 적응에 필요한 기초법·질서, 생활정보 등을 교육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범죄예방교육 신설

3. 2025년도 시행계획

- 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 등 범죄예방 관련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 등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를 포함한 인신매매,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전문강사 배정 지원
- 조기적응프로그램 범죄예방(마약범죄예방 포함) 교재 등 발간
 - 법률상 금지되는 마약류, 마약으로 인한 피해 및 부작용, 처벌규정 및 신고방법 등 마약류 예방을 포함하는 범죄예방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여 경각심 고취

시안)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재 발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범죄예방교육

국립중앙도서관
이민정책연구원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자립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 편성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법무부)	담당자	주도현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6
-------------	----------------	------------	---------	-------------	--------------

4-3-6	다국어 홍보자료 대학별 배포	교육
	▶ 마약류 다국어 홍보자료를 대학에 배포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1. 과제 목표

- 마약류 접촉·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마약류 위험성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확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27조의2(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등
- (과제 내용) 관계부처(식약처 등)에서 제작한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공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여 유학생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3. 2025년도 시행계획

- 관계부처에서 제공한 다국어 홍보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안내(계속)
 - ※ 공문 배포,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각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들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에서 홍보자료 추가 제작 및 개정 시 각 대학에 추가 제공·안내(계속)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교육부)	담당자	이시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766
------	-------------------	-----	---------	------	--------------

4-3-7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 평가지표 설명에 마약류 법령 내용 추가	교육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평가지표 내 마약류 예방교육 반영	

1. 과제 목표

- 마약류 접촉·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마약류 위험성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확대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및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등
- (과제 내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 평가지표(인증·실태조사)*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반영, 대학 자체 마약류 예방교육 참여 유도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연 1회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25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25.10월~)
 - '25년도 인증제 및 실태조사 편람 내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지표* 설명에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제작('25.3월)
 -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4주기('25~'28) 개편을 통해 < B. 유학생 지원 > → ①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에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명시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관련 법령(필수포함),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형법,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등 기초법·질서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 법령 등 이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	-----------------------------------------------------------------------------------------------------------------------------------------------------------------------------

- '25년도 인증제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25.9~10월)
- 정량·정성평가 실시, 가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25.10월~'26.2월)
- 교육국제화 인증제 사업 예산('25년) : 2.61억 원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25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26.3월)
- ※ (인증대학) 사증심사 완화·취업시간 추가, GKS 수확대학 선정 등 혜택 부여 / (비자심사 강화대학-실태조사 기준 미충족) 사증심사 제재 부과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교육부)	담당자	이시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766
------	----------------	-----	---------	------	--------------

4-3-8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에도 마약류 검사 가능	고용
	▶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 지속 추진	
4-3-9	취업교육 및 등록·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마약류 예방 홍보물 배부	
	▶ 취업교육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마약류 예방 홍보물 배부	고용
	▶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 배포	법무

<고용노동부>

1. 과제 목표

- 안전한 외국인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마약류 검사 및 홍보 강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 (과제 내용) 외국인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물 배부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검사)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 지속 추진
 - * 중기중앙회, 노사발전재단, 농협, 수협, 대한건설협회, 한국생산성본부
 - ** 건강검진 시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마약류 검사 가능(비용 사용자 부담)
- (예방 홍보물 배부) 마약류 예방을 위해 홍보물(식약처 제작)을 취업교육기관 배부하여 취업교육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배포·홍보

<법무부>

1. 과제 목표

-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 범죄 증가 억제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홍보물 배부
※ 2024년 11월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950명으로 전년 동기(2,888명) 대비 2.2% 증가(2024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

2. 과제 내용

- 유학생 등 마약범죄 노출 위험이 큰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시 홍보자료 등 배부

3. 2025년도 시행계획

-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시 마약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자료 배포
 - (식약처 등 관계기관) 마약류 예방을 위한 관계자료를 개발하여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공
 - (고용부) 외국인 대상 취업교육 시 관련 홍보자료 배포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지방 관서 방문 시 홍보자료 배부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마약류 예방 홍보물 비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외국인에게 안내자료 배부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과 (고용노동부)	담당자	김정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735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은호 사무관		02-2110-4067

4-4-1	병역판정검사 시 마약류 선별검사	병무
4-4-2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전수검사	
4-4-3	마약류 검사결과 -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및 마약류 검사결과 유관기관 공유		

1. 과제 목표

-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 마약류 검사 결과, 신체등급판정 참고자료로 활용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20조(현역병의 모집)
- (과제 내용) 입영 자원 마약류 검사 실시

3. 2025년도 시행계획

- (병역판정) 문진표 체크자 등 선별적으로 검사
 -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 진술자
 - 병역판정 전담의사·임상 심리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25년도 약 1,000명 예상
 - * 최근 5년 연 평균 약 1,130명

구 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마약류 검사 인원	1,532명	1,135명	1,049명	1,012명	925명

- (입영판정)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 현역병 군 복무 지원자(모병)

- '25년도 약 130,000명 ('25.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구 분	'26년(예측)	'25년(예측)	'24년	비 고
마약류 검사 인원	약 190,000명	약 130,000명	25,372명	'24.7.10.부터 시행

- (방법·절차) 소변으로 간이검사 후 양성자 정밀(확정)검사 실시

- 마약류 검사 전담 인력(임상병리사) 운영
 - * 지방청 11개 검사반 각 1명씩 전담 인력 배치
- 대상자 확인 → (1차) 간이검사 키트* → (2차) 양성자, 질량분석기로 정밀(확정)검사 → (최종) 양성자, 지방경찰청에 명단 통보

년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마약류 검사 양성자*	9명	8명	4명	2명	2명

* 병역·입영판정검사 마약류 검사 최종 양성자

- (시약구매) 마약류 6종 검사키트 적기 확보

- '25년도 시약 구매 소요예산 약 15억 편성
-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계약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
 - * '24. 12월~'25. 1월 입찰 및 계약 → '25. 2월부터 병무청 소속기관 시약 납품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인허가 제품 사용

- (검사항목) 필로폰, 코카인, 몰핀,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 ('24. 7월 이전) 5종 → (이후) 케타민 1종 추가

- (공유체계) 마약류 검사 결과, 국방부 및 경찰청 공유

- 마약류 검사항목별 결과 국방부에 전송 → 국방부 입영자 관리
 - *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검사 결과 공유
- 마약류 정밀(확정)검사 결과 양성자는 지역 경찰청에 명단 통보
 - * (경찰) 수사 개시 → (검찰) 기소 → 법원 형 선고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신체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병역판정검사과 (병무청)	담당자	원정희 주무관	전화번호	042-481-2947
------	------------------	-----	---------	------	--------------

4-4-4	간부 임관 시 마약류 검사 실시	국방
	▶ 쏘 임관 간부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1. 과제 목표

- 장병들을 지휘·통솔하고 총기류 등을 관리하게 될 쏘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의무화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마약류 검사 의무화) 쏘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에 대해 마약류 검사 실시, 중독자는 임관 거부

3. 2025년도 시행계획

- 임관신체검사 및 장기복무 선발 신체검사 시 군 보건의료기관(군 병원 및 사단의무대)에서 마약류 검사 시행

○ '25년도 검사 대상 : 약 30,000명

구 분	'26년(예상)	'25년(예상)	'24년	비 고
마약류 검사 인원	30,000명	30,000명	29,688명	최기 의료기관

- (방법·절차) 소변으로 간이검사 후 군사경찰 통해 과학수사 연구소로 마약류 감정을 의뢰
 - * 민간인 신분인 마약류 감정 대상자의 경우 마약류 감정을 위한 검체 이송을 위탁(녹십자병원)하여 시행 예정
- (마약류 양성자 신고) 민간인 신분인 마약류 감정 대상자가 마약류 감정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군 보건의료기관이 대상자 소속기관으로 마약류 검사(감정) 결과를 통보

○ '25년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 예산 : 3.75억 원 편성

- (시약구매) 마약류 6종 검사키트 적기 확보 및 공정한 구매 계약을 위해 '25년부터 조달방식 변경(부대 자체조달 → 중앙조달)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국방부)	담당자	소령 구정명	전화번호	02-748-6656
------	----------------	-----	--------	------	-------------

4-4-5	군-민간 의료기관 간 마약류 처방 정보 연계	국방
4-4-13	마약류 문제 조기전역자 치료·재활기관 및 취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유관기관과 연계한 마약류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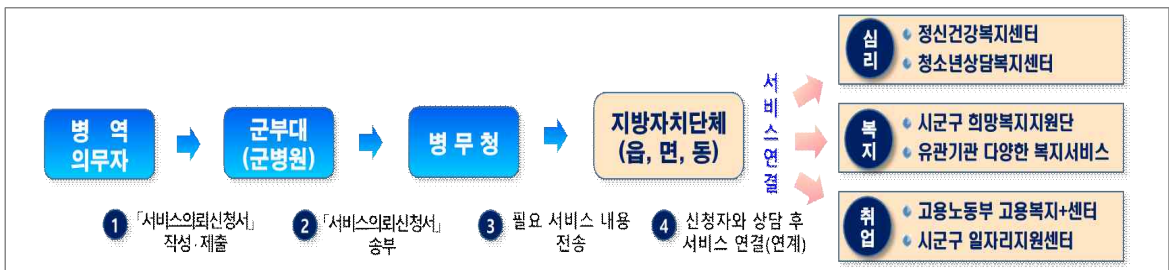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 (과제 내용) 군-의료기관간 처방정보 연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마약류 문제 조기전역자에 대한 군-지역사회 연계 관리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군-의료기관 처방정보 연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시 민간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 (치료·재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약 중독자 대상 진료 및 재활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군-지역사회 연계 관리) 마약 관련 문제로 조기 전역하는 장병이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조치
* 주요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생계지원, 진로지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국방부)	담당자	중령 김은혜	전화번호	02-748-6644
------	-------------	-----	--------	------	-------------

4-4-6	도움·배려 장병에 마약류 이력 장병 포함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주기적 상담 실시	국방
	▶ 마약류 이력 장병을 도움·배려 장병으로 선정 및 지속 관리	

1. 과제 목표

- 마약류 이력 장병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제1차 ('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4-4-6), 부대관리훈령 제232조의2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 (과제 내용) 마약류 이력 장병 도움·배려 장병 선정 관리, 주기적인 상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사후관리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이력 장병* 도움·배려 장병 선정 관리
 - * 입영판정 검사 시 마약류 이력 장병, 국방인사정보체계 연동 ('24.11.25.부)
- (선정기준 마련) 도움·배려 장병 선정기준에 마약류 이력 장병 포함*
 - * 부대관리훈령 제232조의2 ⑤ 장병 도움제도 분류기준에 추가반영 추진
- (전입 시 관리) 국방인사정보체계 이용 마약류 이력 장병 여부를 확인하여 신상파악 책임자 (중대장급 지휘관)가 도움·배려 장병으로 선정*
 - * 선정된 마약류 이력장병은 임무능력 고려 고위험보직 배제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의해 전입 초기 상담 진행 후 사고발생 가능성 고려 주기적 상담 시행 등 사후관리 (신상파악 책임자 연계*)
 - * 상담결과는 신상파악 책임자에게 공유하여 연계 관리체계 구축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이력 장병 사후관리 성과 분석(~'25.12월) 및 개선대책 시행('26.1월 부)

담당부서	병영문화혁신과 (국방부)	담당자	중령 김태우	전화번호	02-748-5162
------	------------------	-----	--------	------	-------------

4-4-7	수사기관 - 군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사이버 순찰 강화	국방
	▶ 수사기관과의 마약 범죄 수사 공조 강화 및 군사경찰 사이버 수사인력 활용	

1. 과제 목표

-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과의 주기적인 정보 교류 및 확대와 사이버 순찰 강화를 통한 병영내 마약류 매매·반입 척결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범정부 ‘마약특별수사본부’ 운영
- (수사기관 - 군 수사기관간 정보 공유)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간의 정보 공유 활성화
- (사이버 순찰 강화) 사이버순찰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군인 관련 마약 범죄 공조체계 공고화
 - 수사기관과 마약 범죄 관련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강화
 - 마약사건 처리 관련 군검찰 통일 지침 토의 및 시행
-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군사경찰)과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장병 마약류 매매 및 군내 반입 방지
 - 주기적인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검찰청, (해양)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美.CID, 美.NCIS 등 • (수사) 마약 범죄 공조수사, 마약 수사기법 공유 등 • (탐지) 군내 마약류 탐지활동간 핸들러, 탐지견 협조 등 • (감정) 마약 범죄 동향(사례), 증거물 감정 협의(긴급감정) 등

- 각 군 군사경찰 사이버 수사인력 활용 사이버 순찰 강화
 - SNS, YouTube,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 정황 확인 및 추적 등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수사기관 업무 교류 및 사이버 순찰 활동 지속 강화

담당부서	군사법정책담당관 (국방부)	담당자	대령(진) 김미영	전화번호	02-748-6811
------	-------------------	-----	-----------	------	-------------

4-4-8	병영 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국방
	▶ 군 내 마약류 공익신고자 포상 수여 및 신고자 보호	

1. 과제 목표

-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병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등
-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 마약류 범죄 신고자 보상금 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군 내 마약 근절을 위해 군 내 마약류 특별신고 기간 운영 지시
 - ‘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 연계하여 특별신고 기간 운영
 - (시기) 매년 6~7월경
 - (혜택) 자진 신고시 양형판단에 적극 고려 / 타인 범죄 신고시 포상 수여 및 신고자 보호조치
- 마약 식별 및 은닉 방지를 위한 신고 활성화
 - 마약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 관련 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 (범죄신고보상금 지급) 연 3,360만원
 - * '24년 마약 관련 신고보상금 지급 : 2건(40만원)
 - (홍보) 마약류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신고보상금 제도 등 홍보 강화(지속)

담당부서	군사법정책담당관 (국방부)	담당자	대령(진) 김미영	전화번호	02-748-6811
------	-------------------	-----	-----------	------	-------------

4-4-9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대한 검사 및 탐지 강화	국방
	▶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시 마약류 반입 차단	

1. 과제 목표

- 취약시기에 대한 검사 및 탐지 강화로 마약류 반입 차단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제1차 ('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4-4-9),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2 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 (과제 내용)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대해 반입물품 검사, 검색기·탐지견을 활용한 탐지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 반입물품 검사 및 탐지 강화
 - (반입물품 검사 강화) 국방부에서 제작한 안내문·포스터·검사지침 등 배포 ('23. 6. 22.부)된 자료 활용 강조* (~지속)
 - * '25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 분기단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강조기간 운영지침에 포함하여 지속 강조
 - (반입물품 탐지 강화) 각 군 군사경찰에서 보유 중인 마약류 검색기, 탐지견 활용 下 탐지 활동 강화 (필요시)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검사 및 탐지강화 성과 분석(~'25.12월) 및 개선대책 시행('26.1월 부)

담당부서	병영문화혁신과 (국방부)	담당자	김태우 중령	전화번호	02-748-5162
------	------------------	-----	--------	------	-------------

4-4-10	군 마약 퇴치 홍보 주간 운영	국방
	▶ ‘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1. 과제 목표

- 군내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퇴치의 날 (6.26.)’과 연계하여 집중 홍보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8조(절주운동 등)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등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한다.

3. 2025년도 시행계획

- (교육)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활용한 마약류 예방교육 집중 실시

- 교육부대별 자체강사 활용 교육 * 교육자료 : 국. 보건정책과 제공
- 사관학교 등 장기 교육과정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관 지원

- (캠페인) 마약 근절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대별 캠페인 실시

- 부대 전광판, 현수막 등에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 게시
- 마약근절 홍보영상 등 국방TV 송출
- 팝업·리플렛·카드뉴스를 활용하여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 (언론기획) 군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다양한 교육자료와 캠페인을 활용한 마약류 퇴치 홍보 지속실시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국방부)	담당자	주무관 서경아	전화번호	02-748-6645
------	----------------	-----	---------	------	-------------

3-2-8	군 훈련소·병과학교 필수교육에 예방 교육 추가	국방
3-2-9	휴가·외출 전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4-4-11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체계 구축	
4-4-12	전역 전 장병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 장병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복무 중 (군 훈련소·병과학교, 출타 전), 전역 전]		

1. 과제 목표

- 장병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통한 경각심 및 근절 상태 유지 지원

2. 과제 내용

- (추진 근거)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8조 (절주운동 등), '25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 분기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강조기간 운영지침, 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내 병영문화혁신 실천과제, 군기강 확립 분야
- (과제 내용) 마약류 예방 교육을 통해 복무 중 (군 훈련소·병과학교, 출타 전)인 군인의 경각심 유지, 전역 전 장병에 대한 근절 상태 유지 강화

3. 2025년도 시행계획

- 복무 중 (군 훈련소·병과학교, 출타 전)인 군인 대상 예방 교육 시행으로 경각심 유지 강화
- (군 훈련소·병과학교) 필수교육*(23.7월부)으로 반영하여 예방교육 준수
 - * 교육과정 세부내용 (보건정책과 제공)

구 분	간 부	병 사
교육과정	양성과정 및 계급별 보수교육과정	양성과정 (군 훈련소)
과목시간	각 신분별 양성과정 및 계급별 보수교육과정 각 1시간	
교육내용	마약류의 위험성 및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	
교육방법	소집교육	
교육 지원	방법	교육부대별 자체강사 활용 교육 * 사관학교 등 장기 교육과정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관 지원
	교안	마약 예방교육 교안 (보건정책과 제공)

○ (출타 전) 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내 출타장병 사고예방 교육 체크리스트에 마약류 예방 분야를 포함하여 시행 강화* ('25년 3월부)

* 체크리스트 항목에 마약류 예방 관련 사항 포함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 시달

구분	교육내용	확인
기타 사고 예방	· 강도·절도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타인의 물품과 현금에 절대 손대지 않는다.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일체의 도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불법 마약류* 구매·소지·복용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 출타중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싸움 발생시 신체접촉하지 말고 현장을 이탈한다.	
	· 출타중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부대 및 간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는다.	

□ 전역 전 장병 대상 예방 교육 시행으로 근절 상태 지속 유도

○ (전역 전) 장병의 마약류 예방 근절 상태 지속 차원에서 지휘관 주관 전역병 사고예방교육 및 간담회 등에 포함하여 시행*('25. 3월부)

* 전역 전 장병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지침 (시기, 방법 등) 시달

※ 상기사항 외 자대 복무 장병들은 분기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강조기간 운영지침 시달 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분기단위, 연 4회)으로 반영하여 시행 강조(~지속)

※ 2025년 이후 추진계획

- 예방교육 시행결과 성과 분석(~'25.12월) 및 개선대책 시행('26.1월 부)

담당부서	병영문화혁신과 (국방부)	담당자	중령 김태우	전화번호	02-748-5162
------	------------------	-----	--------	------	-------------